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731-6111

# 서울시보

선 람	기관의장

제2899호 2009. 3. 26.(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규 칙]

제3657호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 4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1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수송    →    D일 보급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 [입법예고]

제2009-553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9
제2009-573호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
제2009-57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
제2009-58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

## ◆ 고 시

제2009-114호 흥은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2
제2009-115호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신설·폐지	16
제2009-11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9
제2009-117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지형도면	20
제2009-118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25
제2009-119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 계획 결정)	25
제2009-120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35
제2009-121호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 지형도면	36
제2009-12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지형도면	36
제2009-1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37
제2009-124호 가스공급량 추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안)	37
제2009-12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38
제2009-126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40
제2009-12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63
제2009-12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64

## ◆ 공 고

제2009-48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66
제2009-491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66
제2009-528호 마을버스 노선변경(성북03번, 성북08번) 운행계통기준	67
제2009-536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69
제2009-53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폐기)	69
제2009-538호 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70
제2009-539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72
제2009-542호 재단법인 설립허가	72
제2009-54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72
제2009-552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73
제2009-557호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73
제2009-56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청문통지 공시송달	74
제2009-565호 측량업 신규등록	75
제2009-566호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	76
제2009-568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76
제2009-574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승인	76

## ◆ 구 고 시

제2009-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종로구) .....	78
제2009-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종로구) .....	78
제2009-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종로구) .....	84
제2009-13호 도시관리계획[옥외광고물 변경 결정(중구) .....	90
제2009-1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중구) .....	90
제2009-22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변경)(광진구) .....	91
제2009-1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중랑구) .....	92
제2009-13호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중랑구) .....	92
제2009-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성북구) .....	93
제2009-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성북구) .....	95
제2009-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강북구) .....	97
제2009-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강북구) .....	101
제2009-8호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노원구) .....	109
제2009-1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은평구) .....	112
제2009-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양천구) .....	113
제2009-16호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양천구) .....	114
제2009-17호 성림연립재건축 사업계획변경승인(양천구) .....	115
제2009-1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영등포구) .....	116
제2009-19호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계획시설사업)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서초구) .....	122
제2009-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서초구) .....	123
제2009-7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강동구) .....	124

## ◆ 구 공 고

제2009-261호 「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광진구) .....	125
제2009-269호 도시계획사업(철도) 실시계획인가 등 신청에 따른 열람(광진구) .....	125
제2009-2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토지보상)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노원구) .....	128

## ◆ 사업소고시

제2009-33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130
제2009-34호 청소년을 위한 한강문화유적탐방교실 및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단체 공모(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130
제2009-35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131

## ◆ 사업소공고

제2009-12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등록취소)(은평소방서) .....	133
제2009-5호 소방시설업 등록(영등포소방서) .....	133
제2009-9호 소방시설업 등록(송파소방서) .....	134

◆ 정 정 .....	135
-------------	-----

# 자 치 법 규

## [규 칙]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9년 3월 26일

### ◆ 서울특별시규칙 제3657호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그 밖에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사업대상자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직제 등)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

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중전의 제5조) 및 제5조(중전의 제6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개관 시간 등) 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평 일 : 09:00 ~ 18:00
- 2. 토요일 : 09:00 ~ 13:00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개관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담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여러 가지 고충을 접수·처리하고, 노인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 가족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전문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6조(중전의 제8조)부터 제8조(중전의 제10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가정봉사원 파견사업) ① 관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나 보살핌 가족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파견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수급노인”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노인이 아닌

저소득 노인에게도 가정봉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가정봉사원은 노인에 대한 우애방문, 상담, 전화문안과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안내 및 노인을 위한 청소, 세탁, 조리, 심부름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④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가정봉사원 파견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서비스) ① 관장은 병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전부터 주간보호실을 이용한 노인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지역 및 시설 여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관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보살핌 가족이 없는 심신허약, 치매 또는 중풍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회교육사업) ① 관장은 노인, 그 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적응, 노인건강, 노인간호, 노인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노인의 유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독서, 서예, 체조, 레크리에이션·장기·바둑 등 다양한 취미활동실, 교양활동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노인의 기능·특기·취미별로 그룹을 구성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관장은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수시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거나 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제9조(중전의 제12조) 및 제10조(중전의 제13

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복리후생사업) 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목욕실 및 이·미용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능회복사업) 관장은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기능회복실에서 마사지, 기능훈련치료 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훈련 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1조(중전의 제15조)부터 제13조(중전의 제17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 육성사업) ① 관장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 사업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는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수행의 각 분야에 활용한다.

제12조(복지협동사업) 관장은 결연·후원사업 및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등 복지협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노인일자리사업) ① 관장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노인이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그 밖의 사업)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 외에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료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미리 비용수납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 설치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노인종합복지관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다. 동절기에 한하여 단축하던 복지관 개관시간을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함

[별지 서식]

&lt;앞면&gt;

## 가정봉사원 파견신청서

접 수 번 호			
성 명	(한글)	성 별	남, 여
	(한자)	주민등록번호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지정내용		연 락 처	
주 소			
일상 상태	보 행	○ 가능 ○ 약간 불편 ○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 휠체어 사용 ○ 불능	
	생활 수행 정도	○ 자기 일을 할 수 없다 ○ 조리, 세탁이 안 된다 ○ 물건을 사러 외출할 수 있다	
	기타 참고사항		
불 편 내 용 구체적 기재			
가 족 사 항			
파견요청 일시			
봉사내용		○ 우애방문 ○ 상담 ○ 전화문안 ○ 노인복지시설안내 ○ 청소 ○ 세탁 ○ 조리 ○ 심부름 ○ 시장보기 ○ 기타( )	
※ 뒷면에 주소의 약도를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귀 복지관에 가정봉사원 파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장 귀하

<뒷면>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53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수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관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신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전화: 02)2115-7818, FAX: 02)2115-7829, E-mail: mschung6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73호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대표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서관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
  - 서울대표도서관의 운영
  - 도서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정책 개발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도서관 지원 및 국내·외 협력사업
  -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및 위탁 운영 사업
  -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

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다. 재단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하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명시함

-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부금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전화 : 02)2171-2245, FAX : 02)2171-2489, E-mail : lemii@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7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 실시계획에 따라 소방사 정원 300명을 증원하고, 탄력적 정원조정을 위하여 실·국별 정원을 조정하며, 기능직 직급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직렬·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731-6151, FAX : 731-6309, E-mail : harrukki@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8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이미 삭제된 조문과 가지번호 정리에 따라 조문번호를 변경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2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담당관( 전화 : 02)6321-4270~1, FAX : 02)3707-980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4호  
홍은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  
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율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기정	B	9	홍은2동	11-111	4.5	170	7층 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 (수복)
변경	변경없음				4.7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지정

- 가. 정비구역 명칭 : 홍은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신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47,468.5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합계	47,468.5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1,146	23.5	
	도로	7,132	15.0	
	어린이공원	1,764	3.7	
	소공원	630	1.3	
	공공공지	367	0.8	
	어린이집	743	1.6	
	노인복지시설	510	1.1	
택지 (획지)	소계	36,322.5	76.5	
	택지 1	29,626.7	62.4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택지 2	6,695.8	14.1	"

2)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형태	연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일반도로	210	홍은동13-42	홍은동11-11	노선축소
변경	소로	3	3	6	"	"	101	13-42	14-51	
기정	소로	3	5	6	"	"	215	11-214	11-391	노선연장 및 확폭
변경	소로	2	(1)	8	"	"	243	11-314	11-391	
기정	소로	3	10	6	"	"	435	10-183	9-338	노선분리 및 확폭
변경	중로	3	(1)	12	"	"	213	11-83	9-338	
변경	소로	3	10	6	"	"	222	10-183	11-29	노선분리
신설	중로	2	(1)	8~15	"	"	320	산14-2	9-292	
폐지	소로	3	6	6	"	"	225	11-240	9-341	
폐지	소로	3	7	6	"	"	230	11-771	10-197	
폐지	소로	3	8	6	"	"	95	11-506	9-292	
폐지	소로	3	(11)	6	"	"	72	11-162	11-152	

※ ( )는 임시 노선번호 부여

나)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홍은동 11-415번지 일대	-	증)1,764	1,764	-
신설	공원	소공원	홍은동 11-310번지 일대	-	증)630	630	

## 다) 공공공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홍은동 11-839,11-213번지 일대	125 (61.4)-	감)61.4 (감61.4)	63.3 ( - )	공공공지 125m <sup>2</sup> 중 구역편입 면적 61.4m <sup>2</sup> 감소
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홍은동 11-263,11-264번지 일대	90	감)90	-	공공공지 기능 상실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홍은동 11-155번지 일대	-	증)367	367	

※ ( )는 구역내 면적임.

## 라) 사회복지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홍은동 11-80번지 일대	496	증)14	510	위치변경
신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홍은동 11-207번지 일대	-	증)743	743	기존 구립어린이집 확장 및 위치변경

## 3)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m <sup>2</sup> )	명칭	면적 (m <sup>2</sup>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홍은 제13 주택재개발구역	47,468.5	택지	36,322.5	홍은동 11-111번지 일대	280	-	-	280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층)
명 칭	면적(㎡)					
택지	36,322.5	121,453	공동주택	29.0이하	196.0이하	4~15 (평균 10.76)
사회복지시설	510	관계 법령에 따름	노인복지시설	관계 법령에 따름		
사회복지시설	743	"	어린이집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건립세대 : 643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530세대(82.4%)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상 : 113세대(17.6%) - 임대주택 : 116세대(18.0%) · 전용면적 40㎡ 이하 : 58세대 · 전용면적 40~85㎡ : 58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4)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7,468.5	-	47,468.5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7,238.5	감) 47,238.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0	증) 47,238.5	47,249.5	99.5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19.0	-	219.0	0.5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홍은 제1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서대문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

거정비과(☎02)3707-8235)와 서대문구 재개발과(☎02)330-194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5호**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신설·폐지**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가로변버스전용차로 폐지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항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폐지

도로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류	폐지일	비 고
일반 도로	등촌중학교 ~ 양화교	공항로	2.5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2009.4.1일부터	

나. 공항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도로구분	구 간	가로명	연장 (km)	전용차로 종류	시행일	운영시간
일반 도로	등촌중학교 ~ 양화교	공항로	2.5	중앙버스 전용차로	2009.4.1일부터	24시간 전일제

다. 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2009년 3월 현재)

전 일 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로명	운영구간	거리 (km)	운영개시
왕산로	동대문R ~ 청량리R	3.3	93.2
동작대로	이수교 ~ 과천시계	4.8	93.2
의주로	녹번역3 ~ 서대문R	4.8	93.8
신촌로	신촌R ~ 아현고가	2.0	93.8
공항로	발산역4 ~ 등촌중학교	1.4	93.8
현충로	한강대교남단 ~ 이수교	2.5	93.8
신반포로	이수교차로 ~ 논현역4	3.6	93.8
노량진로	대방역3 ~ 한강대교남단	3.1	93.8
	영등포R ~ 대방역3	1.1	94.8
종로	세종로4 ~ 동대문R	2.8	94.5
새문안길	서대문R ~ 세종로4	1.1	94.5
퇴계로	서울역R ~ 광희동4	3.2	94.5
한남로	한남5 → 한남초교	0.6	94.5
망우로	청량리R → 시조사3	1.1	94.8
	망우역4 ~ 구리시계	2.1	94.8
강남대로	영동1교남단 ~ 염곡4	1.0	94.12
양화로	합정R ~ 신촌R	2.6	94.12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남대문로	광교R ~ 서울역R	2.0	95. 4
사 평 로	강남성모병원3 ~ 반포IC	1.3	95. 4
양 평 로	양평동4 ~ 영등포전화국4	1.5	95. 4
압구정로	한양APT4 ~ 한남대교남단	2.5	95. 4
남부순환로	시흥IC ~ 까치고개	7.3	95. 4
올림픽로	삼성4 ~ 잠실역4	3.3	95. 5
	축협풍납 ~ 올림픽회관	1.0	99.12(07.8 전일제 변경)
대 학 로	이화R → 혜화R	1.5	96. 8
	종로4가 → 이화R	0.6	03. 7
하 정 로	동천교4 ~ 신답철교	0.9	03. 7
창경궁로	종로4가 -> 혜화R	0.5	03. 7
관 악 로	봉천4 ~ 송실대3	2.0	98. 2(07.1 전일제 변경)
영등포로	영등포R ~ 오목교	3.1	95. 5(07.8 전일제 변경)
영동대로	영동대교남단 ~ 학여울역4	3.5	95. 5(07.8 전일제 변경)
풍 납 로	천호4 ~ 축협풍납	1.2	99.12 (07.8 전일제 변경)
소 계	32개 구간	73.3	

### 시 간 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7시~10시, 17시~21시, 토요일·공휴일 제외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왕십리길	한양공고앞4 ~ 성동교북단	3.4	93. 8
용 호 로	원효대교남단 ~ 여의교	1.0	94.8(00.2 시간제 변경)
현 룡 로	염곡4 ~ 내곡IC	2.9	95.4(00.2 시간제 변경)
등 촌 로	등촌3 ~ 목동역	2.9	95.4(00.2 시간제 변경)
월 계 로	월계초교입구 ~ 을지병원4	2.0	95.4(98.9 시간제 변경)
화 곡 로	화곡역4 ~ 양원초교앞	1.5	96.8(03.2 시간제 변경)
	강서구청입구4 ~ 화곡역4	1.9	95.5(07.8 시간제 변경)
원 효 로	원효대교북단 ~ 남영역	2.7	96.8(00.2 시간제 변경)
동 일 로	수락파출소 ~ 망우로	10.2	96.8(98.9 시간제 변경)
통 일 로	녹번역3 ~ 박석고개	3.5	96.8(00.2 시간제 변경)
남부순환로	양재역4 ~ 학여울역4	3.7	96.8(00.2 시간제 변경)
공 항 로	발산역4 ~ 공항입구	2.8	96.8(00.2 시간제 변경)
강 서 로	발산역4 ~ 화곡역4	2.1	96.8(98.9 시간제 변경)
천호대로	천호4 ~ 방아다리4	2.7	98.2(00.2 구간축소)
도산대로	신사역 4 ~ 안세병원 4	0.9	98.2(07.1 구간축소)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종 암 로	종암경찰서 ~ 고대입구3	1.3	99.12
성 산 로	성산1교 ~ 사천고가	1.5	94. 5(07.8 시간제 변경)
은 평 로	서부세무서 ~ 녹번역3	0.7	95. 5(07.8 시간제 변경)
올림픽로	올림픽회관 ~ 잠실4	1.5	99.12(07.8 시간제 확장)
소 계	19개 구간	49.2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 운영시간 : 00시~24시, 토요일·공휴일 포함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천호대로	신답R ~ 아차산역남측3	4.5	96. 2
	신답철교 ~ 신답R	1.4	03. 7
하 정 로	신설동R ← 신답철교	1.7	03. 7
	용두역(동대문구청역) → 신답철교	0.3	05. 9
삼 일 로	퇴계로2가 ~ 종로2가	1.0	04. 5
도 봉 로	의정부시계 ~ 미아4	10.0	04. 7
미 아 로	미아4 ~ 혜화R	4.0	04. 7
창경궁로	혜화R → 원남4	1.3	04. 7
강남대로	신사역4 ~ 영동1교남단	4.8	04. 7
수 색 로	고양시계 ~ 사천교	3.9	04. 7
성 산 로	사천교 ~ 이대후문	2.9	04. 7
경 인 로	영등포R ~ 오류IC	4.4	05. 7
망 우 로	망우역4 → 청량리R	4.9	05. 7
	시조사3 → 망우역4	3.3	05. 7
시흥대로	대림3 ~ 기아대교 앞	6.5	05.12
대 방 로	대림아파트 앞(대방동 383) ~ 대림3	2.5	05.12
마 포 로	마포대교북단~충정로삼거리	3.4	06.12
한 강 로	한강대교노들섬~서울역남단	4.1	06.12
송파대로	잠실대교 남단 ~ 성남시계	6.3	08. 1
통 일 로	고양시계 ~ 박석고개	2.4	08.10
공 향 로	등촌중학교 ~ 양화교	2.5	09.4
소 계	21개 구간	76.1	

※ ( )는 동일노선의 중복구간으로 소계거리에서 제외

**기 타 구 간** (중앙버스전용차로-경부고속도로)

□ 운영시간

- 평 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시~21시
- 토요일, 공휴일 : 서울·부산 양방향 09시~21시
-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7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24시까지
  -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시부터 연휴 마지막날 24시까지

도 로 명	운 영 구 간	거 리 (km)	운 영 개 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 서초IC	2.6	'04. 7 : 최초 시행 '08. 7 : 평일 확대 시행 '08.10 : 운영시간 변경
	서초IC ~ 한남대교 남단	4.2	'08. 7 : 최초 시행 '08.10 : 운영시간 변경
소 계	1개 구간	6.8	

**전 체 구 간**

총 계	73개 구간	205.4km	-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시설담당관 중앙차로팀(6361-3981) 및 BRT팀(6361-398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광진구 공고 제2008-654호(2008.10.14)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 열람공고한 광진구 능동·구의2동 일대(어린이대공원)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함.

##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광진구 능동· 구의동 일대	3층12m이하	212,121	'96.7.5 (서고 195호)	아차산역지구단위계획 구역내로서 문화예술 용도50%이상 유치시
				4층20m 이하	6,879		
변경	고도 지구	최고 고도 지구	"	4층 16m이하 단, ① 공원경계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4층13m이하 ②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6,879㎡)로서 문화예술용도50%이상 유치시 4층 20m이하	219,000	'96.7.5 (서고 195호)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해당구청 도시계획부서 비치 도면과 같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6360-4742) 및 광진구 도시디자인과(☎450-7683)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7호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호(2009.02.0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된 중구 남대문로5가 461번지 일대 '남산1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위 치 : 중구 남대문로5가 461번지 일대
2. 면 적 : 604,178㎡
3.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총괄 및 시설조서 : 별첨

4. 도시계획시설(남산1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지형도면 :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15-7591) 및 서울특별시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시설과(☎710-3395)에 비치된 도면과 같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남산제1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가.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04,178.00	106,691.68	15	10,992.93	47,937.64	317	
기 반 시 설	소 계	107,402.83				137	
	도 로	62,676.50					
광 장	44,726.33	44,726.33				137	
조 경 시 설	1,262.05	1,262.05				3	
유 희 시 설	1,796.08	1,796.08				5	
휴 양 시 설	7,377.77	7,377.77				115	
교 양 시 설	6,616.08	6,616.08	3	5,300.92	29,034.47		
운 동 시 설	3,694.87	3,694.87				43	
편 익 시 설	12,574.02	12,574.02	11	4,598.27	16,765.69	14	
관 리 시 설	1,467.98	1,467.98	1	1,093.74	2,137.48		
녹 지 및 기 타	461,986.32						
시설율 (법정 40%)	106,691.68 / 604,178.00 * 100 = 17.66%						
건폐율 (법정 10%)	10,992.93 / 604,178.00 * 100 = 1.82%						

##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개소)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604,178.00	106,691.68		15	10,992.93	47,937.64	317		
기 반 시 설	소계		107,402.83	71,902.83					137		
	도로		62,676.50	27,176.50						신설	
				(35,500.00)							
	광장		가	44,726.33	44,726.33				137	신설	
			가-1	(5,088.39)	(5,088.39)				(8)	신설	
			가-2	(20,598.42)	(20,598.42)				(57)	신설	
			가-3	(3,040.20)	(3,040.20)				(1)	신설	
			가-4	(5,885.70)	(5,885.70)				(11)	신설	
			가-5	(5,106.49)	(5,106.49)				(39)	신설	
			가-6	(435.98)	(435.98)				(3)	신설	
		가-7	(2,447.87)	(2,447.87)				(12)	신설		
		가-8	(2,123.28)	(2,123.28)				(6)	신설		
조 경 시 설	소계		1,262.05	1,262.05					3		
	외용묘		사	1,262.05	1,262.05				3	신설	
유 희 시 설	소계		1,796.08	1,796.08					5		
	어린이놀이터		라	1,796.08	1,796.08				5	신설	
휴 양 시 설	소계		7,377.77	7,377.77					115		
			다	7,377.77	7,377.77				115	신설	
			다-1	(2,061.83)	(2,061.83)				(13)	신설	
			다-2	(1,056.43)	(1,056.43)				(7)	신설	
			다-3	(428.26)	(428.26)				(4)	신설	
			다-4	(826.88)	(826.88)				(19)	신설	
			다-5	(1,065.04)	(1,065.04)				(10)	신설	
			다-6	(720.23)	(720.23)				(14)	신설	
			다-7	(218.91)	(218.91)				(6)	신설	
			다-8	(118.10)	(118.10)				(2)	신설	
			다-9	(145.71)	(145.71)				(12)	신설	
			다-10	(159.59)	(159.59)				(9)	신설	
			다-11	(363.49)	(363.49)				(12)	신설	
		다-12	(213.30)	(213.30)				(7)	신설		
교 양 시 설	소계		6,616.08	6,616.08		3	5,300.92	29,034.47			
	남산시립 도서관		5	2,683.70	2,683.70	R/C	1	1,909.84	9,329.37		신설
	안중근기념관		6	1,185.02	1,185.02	R/C	1	1,185.02	3,799.55		신설
	서울과학 교육원		7	2,639.69	2,639.69	R/C	1	2,206.06	15,905.55		신설
	봉수대		차	107.67	107.67						신설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개소)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 동 시 설	소 계		3,694.87	3,694.87					43		
	배드민턴장	마	572.18	572.18						신설	
		마-1	(245.22)	(245.22)						신설	
		마-2	(326.96)	(326.96)						신설	
	체력단련장	바	3,122.69	3,122.69					43	신설	
		바-1	(248.11)	(248.11)					(10)	신설	
		바-2	(1,687.91)	(1,687.91)					(12)	신설	
		바-3	(233.78)	(233.78)					(9)	신설	
		바-4	(759.64)	(759.64)					(3)	신설	
	바-5	(193.25)	(193.25)					(9)	신설		
편 의 시 설	소 계		12,574.02	12,574.02		11	4,598.27	16,765.69	14		
	주차장	나	8,013.52	8,013.52						14	신설
		나-1	(851.01)	(851.01)							신설
		나-2	(4,179.70)	(4,179.70)						(9)	신설
		나-3	(1,984.20)	(1,984.20)							신설
		나-4	(998.61)	(998.61)						(5)	신설
	화장실	2	529.55	529.55		6	529.55	529.55			신설
		2-1	(118.48)	(118.48)	R/C	(1)	(118.48)	(118.48)			신설
		2-2	(30.66)	(30.66)	R/C	(1)	(30.66)	(30.66)			신설
		2-3	(140.11)	(140.11)	R/C	(1)	(140.11)	(140.11)			신설
		2-4	(74.29)	(74.29)	R/C	(1)	(74.29)	(74.29)			신설
		2-5	(86.63)	(86.63)	R/C	(1)	(86.63)	(86.63)			신설
		2-6	(79.38)	(79.38)	R/C	(1)	(79.38)	(79.38)			신설
		서울타워	3	559.94	559.94	R/C	1	2,502.16	13,842.74		신설
		매점	4	784.80	784.80		4	784.10	784.10		신설
		4-1	(79.72)	(79.72)	R/C	(1)	(79.02)	(79.02)			신설
		4-2	(239.18)	(239.18)	R/C	(1)	(239.18)	(239.18)			신설
		4-3	(310.76)	(310.76)	R/C	(1)	(310.76)	(310.76)			신설
		4-4	(155.14)	(155.14)	R/C	(1)	(155.14)	(155.14)			신설
		삭도하단 승강장	아	1,612.84	1,612.84			298.67	1,125.51		신설
		한국삭도 (종점)	자	956.24	956.24			483.79	483.79		신설
	경사형 엘리베이터	타	117.13	117.13						신설	
관 리 시 설	소 계		1,467.98	1,467.98		1	1,093.74	2,137.48			
	관리실	1	1,043.74	1,043.74	R/C	1	1,043.74	2,087.48		신설	
	남산가압장	카	424.24	424.24			50.00	50.00		신설	
녹 지 및 기 타	소 계		461,986.32								
	녹지 및 기타		461,986.32							신설	

## 다. 도로조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7,176.50				
중로	소계				4,500.00				
	1	1	20	895.0	(17,9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 경계	공원 경계	신설
	1	2	20	880.0	(17,600.00)	도시계획도로	공원 경계	공원 경계	신설
	2	1	15	300.0	4,500.00	부진입로	중로 1-1	중로 1-2	신설
* 도시계획도로는 부지면적에는 산입, 시설면적에는 ( )로 표시하여 미 산입시킴으로서 시설율에 미포함.									
소로	소계				16,300.00				
	1	1	10	165.0	1,650.00	부진입로	중로 1-1	중로 1-2	신설
	1	2	10	200.0	2,000.00	부진입로	중로 1-1	주차장2	신설
	2	1	8	36.0	288.00	부진입로	중로 1-1	주차장3	신설
	3	1	4	65.0	260.00	산책로	주차장2	진입광장4	신설
	3	2	3	36.0	108.00	부진입로	소로 1-2	주차장3	신설
	3	3	6	273.0	1,638.00	부진입로	중로 1-1	공원 경계	신설
	3	4	6	336.0	2,016.00	부진입로	공원 경계	주차장4	신설
	3	5	6	645.0	3,870.00	부진입로	공원 경계	진입광장7	신설
	3	6	4	138.0	552.00	산책로	소로 3-4	진입광장8	신설
	3	7	4	97.0	388.00	산책로	소로 3-5	진입광장8	신설
	3	8	5	479.0	2,395.00	부진입로	공원 경계	중로 1-2	신설
	3	9	5	48.0	240.00	산책로	산책로13	진입광장5	신설
	3	10	5	164.0	820.00	산책로	중로 1-2	남산3호터널	신설
3	11	5	15.0	75.00	산책로	중로 1-1	공원 경계	신설	
산책로	소계				6,376.50				
	-	1	5	38.0	190.00	산책로	중로 1-2	진입광장1	신설
	-	2	5	25.0	125.00	산책로	중로 1-1	진입광장1	신설
	-	3	5	55.0	275.00	산책로	소로 1-1	진입광장2	신설
	-	4	3	44.0	132.00	산책로	중로 1-2	진입광장2	신설
	-	5	8	48.0	384.00	산책로	중로 2-1	주차장2	신설
	-	6	5	42.0	210.00	산책로	중로 2-1	진입광장3	신설
	-	7	3	21.0	63.00	산책로	중로 2-1	산책로6	신설
	-	8	3	82.0	246.00	산책로	산책로6	주차장2	신설
	-	9	2	22.0	44.00	산책로	산책로8	산책로6	신설
	-	10	2	18.0	36.00	산책로	산책로6	진입광장3	신설
	-	11	4	23.0	92.00	산책로	중로 1-1	진입광장4	신설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 (m)	연 장(m)	면 적(m <sup>2</sup>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산책로	-	12	5	34.0	170.00	산책로	중로 1-2	주차장2	신설
	-	13	3	130.0	390.00	등산로	중로 1-2	소로 3-9	신설
	-	14	4	637.0	2,548.00	등산로	소로 3-9	진입광장6	신설
	-	15	2	157.0	314.00	등산로	휴게소2	산책로14	신설
	-	16	3	56.0	168.00	등산로	공원 경계	소로 3-5	신설
	-	17	3	159.0	477.00	등산로	공원 경계	소로 3-5	신설
	-	18	1.5	13.0	19.50	등산로	산책로21	산책로20	신설
	-	19	1.5	66.0	99.00	등산로	휴게소9	소로 3-8	신설
	-	20	3	56.0	168.00	등산로	공원 경계	반공청년기념비	신설
	-	21	2	79.0	158.00	등산로	공원 경계	휴게소3	신설
	-	22	2	34.0	68.00	등산로	산책로21	소로 3-8	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8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

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 다 음 -

등록 번호	등록 년월일	법인명	대표자	주소	산림사업 종류	비 고
서울2009-006	2009. 3.17	(주) 큰술건설	박태우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6-43 대륙빌딩 402-1호	나무병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9호  
도시관리계획(서울시립대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동대문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하고, 2009. 2.18 개최한 우리시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가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 전농동 150 일대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 결정 취지

- 대학가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의해 제시된,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진입 가로의 환경개선사업 및 연접필지 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결정하는 사안임.

I.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신설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150번지 일대	36,221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신설 사유
신설	서울시립대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립대 주변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진입 가로의 환경개선사업 및 연접필지내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 1

II.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계		36,221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594	4.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265	38.8	
	제2종일반주거지역	405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18,957	55.7	

주) (\*) 획지계획 AI-①, ②의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은 도시건축공동위  
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향후 건축허가시 변경결정고시할 예정임.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m <sup>2</sup>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종암동~청량리~ 전농동183-37	59,313 (3,710)	2,341 (323)	12	서고시 제164호 (82.4.22)	전농로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 # 2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합계	5	858	22,261	1	120	3,417	-	-	-	4	738	18,844
대로	2	690	18,591	-	-	-	-	-	-	2	690	18,591
중로	1	120	3,417	1	120	3,417	-	-	-	-	-	-
소로	2	48	253	-	-	-	-	-	-	2	48	253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1	26~35	보조간선 도로	1,900 (360)	답십리동	전농동	일반 도로	-	총고시제722호 (36.12.26)	전농로
기정	대로	3	92	25~30	보조간선 도로	1,500 (330)	전농동	답십리동 광로1-5	일반 도로	-	건고시제743호 (63.12.30)	배봉로
기정	중로	1	318	23~50	집산도로	120 (120)	전농동 150-8	전농동 159-10	일반 도로	-	서고시제357호 (87.5.21)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90 (27)	전농동 152-9	전농동 152-39	일반 도로	-	서고시제241호 (76.9.23)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21 (21)	전농동 150-84	전농동 150-1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 사유서

도로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 3-2	• 신설 -폭 : 4m, -연장 : 21m	• 공공공지와 연결한 일부대지의 맹지화를 해결하고자 도로를 신설

2) 공간시설

가) 녹지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녹지	경관녹지	전농동 150-62번지 일대	679	서고시제189호 (93.6.22)	

나)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공지	전농동 150-1번지일대	2,369	감)82	2,287	동고제1호 (98.1.9)	
신설	공공공지	전농동 103- 320번지 일대	-	증)432	432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공공공지 축소 (면적 : 82㎡)	• 공공공지와 연결한 일부대지의 맹지화를 해결하고자 대지와 맞는 일부분에 한하여 공공공지 해제 후 도로로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면적 432㎡)	• 획지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공지 신설 • 떡진교 방향 버스정류장 통합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신설

3) 공공 · 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사회복지 시설	전농동 146번지	704	180/200	60	20m	동고시제1호 (98.1.9)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 # 3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 : # 4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획지계획	• 개별 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맹지, 건축불가대지 등)가 필요한 경우	
공동개발 (규제)	• 연결한 동일 소유필지로서 기 공동개발된 2 이상의 필지 • 개별 소유필지로서 계획적 유도(대지의 정형화 등)가 필요한 2 이상의 필지	

## 2)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신설	①	A1	4,049	103-14	263	1,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계획</li> <li>• 부분 편입 : 103-14</li> </ul>
				103-80	400		
				103-317	24		
				103-318	23		
				103-319	113		
				103-320	112		
				103-417	73		
				103-493	49		
신설	②	A1	4,049	103-14	259	1,0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획지계획</li> <li>• 부분 편입 : 103-14, 103-297, 103-298</li> </ul>
				103-82	278		
				103-83	93		
				103-84	46		
				103-85	53		
				103-149	109		
				103-259	106		
				103-297	1		
				103-298	1		
				103-321	83		
				103-637	19		
				103-638	24		
신설	-			103-340	1,476		
신설	-			150-4	301		• 공동개발(규제)
				150-8	143		
신설	-	A2	1,587	152-1	645		• 공동개발(규제)
신설	-			152-2	735		
				152-75	22		
				152-85	50		
				152-111	109		
				152-171	26		

구분	획지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고
신설	①			135-44	78	328	• 획지계획
				135-46	25		
				150-73	36		
				150-75	116		
				150-79	73		
신설	-			150-113	14		• 공동개발(규제)
				151	46		
				152-4	192		
				152-11	307		
신설	-			152-92	30		• 공동개발(규제)
				153-1	99		
신설	-			153-3	76		
신설	-			103-525	3		
신설	-			103-526	3		
신설	-			103-531	26		
신설	-			103-532	23		
신설	-			103-533	71		
신설	-			135-3	260		
신설	-			135-39	49		
신설	-			143-1	274		
신설	-			143-2	40		
신설	-			144-1	407		
신설	-	A3	7,450	146	390		
신설	-			147-1	99		
신설	-			147-2	347		
신설	-			149-1	179		
신설	-			149-2	66		
신설	-			149-3	30		
신설	-			150	481		
신설	-			150-1	1,268		
신설	②			150-11	93	215	• 획지계획
				150-64	122		
신설	-			150-12	886		
신설	-			150-35	2		
신설	-			150-36	3		
신설	-			150-37	75		
신설	-			150-62	390		
신설	-			150-63	83		
신설	-			150-71	173		
신설	-			150-76	33		
신설	-			150-77	13		
신설	-			150-99	5		
신설	-			150-106	11		
신설	-			153-2	294		
신설	-			154	159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베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불허/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 층
불허용도	A (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관지구내 불허용도(미관지구내 해당하는 대지에 한함)</li> <li>•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간선변, 시립대 진입로에 한함)</li> <li>•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 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li> <li>-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li> </ul> </li> <li>•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li> <li>• 공장</li> <li>•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li> <li>•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li> </ul>
권장용도	a (전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li> <li>•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li> </ul>

주) 1.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의 연면적이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 관련법규 및 조례를 따름.

나) 용적률 계획

위 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	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23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	

주) 1. 하나의 대지에 2개 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 면적 대비 산술평균을 통한 용적률 적용

다) 높이계획

위 치	최고높이(m)	비고
시립대앞교차로 주상복합	50	
전농로변	30	
시립대 진입로 및 주거지역 이면부	20	

주) 1.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별표4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된 층수 적용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도면표시	위치	계획내용		
GR1	시립대앞 교차로 가각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30%이하
			허용용적률	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50m이하		
GR2	전농로변 획지 A1-①, ②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1)	기준용적률	200%/230%이하
			허용용적률	230%/250%이하
높이	최고높이	30m이하		
GR3	시립대앞 교차로 가각부, 전농로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80%이하
			허용용적률	200%이하
높이	최고높이	30m이하		
GR4	진입로변, 이면부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80%이하
			허용용적률	200%
높이	최고높이	20m이하		
GR5	진입로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140%이하
			허용용적률	150%이하
높이	최고높이	20m이하		

주1)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면적대비 산술평균을 통한 용적률 적용

3)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구분	내용		비고
배치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li> <li>•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li> <li>• 보차혼용통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li> </ul>	결정도 참조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 5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간선변(전농로변, 진입로변) : 1~3m •이면부 : 1m, 맞은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	결정도 참조
	썸지형 공지 •최소면적25㎡ 이상, 최소폭 5m 이상 [피로티 구조(유효높이 6m 이상)가능] •지정 위치 : 1개소	
통로	공공보행 통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보차혼용 통로 •보행자 및 차량이 자유롭게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1개소(폭 4m, 건축한계선)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제 어 기 준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도로에서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이면도로에서의 차량출입불가 필 지에 한하여 일부 허용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하여 일정구간이상 차량출입 불허	결정도 참조
공동주차출입구	•이면도로에서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연결한 2개의 필지에 지정	

3)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옥외광고물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08.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등 관 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08-36호)”기준을 준수	
자연지반보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조성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 며 동식물이 자생할 수 있는 자연 토양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보존 권장	
옥상녹화	•“국토해양부 지침 조경기준(2008.7.15)”과 “건축물 옥상녹화시스템 유형결정과 관 리 매뉴얼(2007.6)”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건축물의 신축시 “환경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5.12)”에 따라 건축유 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중수도시설	•하수도법 제26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를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신·재생에너지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 할 것을 권장	
에너지 절감율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을 권장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따를 것을 권장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따를 것을 권장	

라. 인센티브 항목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일반 계획 요소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0.1	
	공동개발	규제		준수시	기준용적률×0.08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주차 장제외건축연면적)×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 공지	짜지형 공지		위치 준수,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
		건축 한계선	전면 공지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1.5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친 환경 계획 요소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 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3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 0.05이내	
		중수도시설 <sup>2)</sup>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시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sup>2)</sup>		준수시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 지면적×0.02 이상 설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시
		에너지 절약	1등급	준수시	기준용적률×0.08	• 에너지 절감율 : 33.5% 이상 • 에너지 성능지표 : 81점 이상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85점 이상
2등급	기준용적률×0.05		• 에너지 절감율 : 22.5~33.5% 이상 • 에너지 성능지표 : 74~81점 이상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75~85점 이상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1+1.3×가중치×a)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 부지의 용적률 • a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 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주) 1.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지침상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의 20% 이상은 환경친화계획요소 준수시 제공  
 2. 대지면적 2,000㎡ 이상이고,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 조성 및 설치기준은 서울시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건축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2)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항목	계획 내용	비고
최고높이 완화	• 기부채납시 -1.5D×[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 면적)]	

주) 완화된 높이는 대지별로 지정된 최고높이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라.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권한 : 구청장)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 · 쌈지형공지, 대지내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수중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구역과 연결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5. 통로의 성격 · 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6. 주차출입구 변경(신설)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공동개발 변경 또는 대지 분할에 의한 경우)
7.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 (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III. 관계도면 :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지형도면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 갈음하고자 함)

-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신설)
-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
-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신설)

□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3)와 동대문구 도시계획과(☎02-2127-494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http://urban.seoul.go.kr/>) 도시계획소식/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0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중량구공고 제2009-146호(2009.2.20)로 건축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중량구 신내동 57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제한 대상구역

예정구역 번호	동 명	지 번	면적(ha)	비 고
12	신내동	579번지 일대	2.2ha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중랑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139) 및 중랑구 주택과(☎ 490-3380~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1호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83-3번지 및 송인동 일대 55-2번지 일대(창신제1·2·3동 및 송인제1동 일대)를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 4.30)로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
-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83-3번지 및 송인동 55-2번지 일대  
(창신제1·2·3동 및 송인제1동 일대)  
나. 면 적 : 846,100㎡

3.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및 종로구 재정비추진단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699, 종로구 재정비추진단(☎731-191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지형도면**

김포시고시 제2009-27호(2009.02.18.)로 결정된 광역도시 고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신설	대로	3	224	28	주 간선도로	602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80-4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7-6	일반 도로			

- 2.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 3. 열람 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7)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2)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5-1번지 및 서대문구 홍은동 산1-549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에 대하여 200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09.03.0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 조성이 완료된 영등포구 문래동6가 25-1 부지와 홍은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조건이 부여된 서대문구 홍은동 산1-549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여 인근 지역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소공원	영등포구 문래동6가 25-1	-	증)1,954.7	1,954.7		
"	공원	소공원	서대문구 홍은동 산1-549일대	-	증)747.0	747.0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92) 및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41), 서대문구 도시계획과(☎330-1588)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4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  
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안)**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따

라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온압보정계수 개념

○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 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보정계수

가.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나. 보정계수 : 0.9983

- 3. 적용범위
  -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 4. 적용방법
  - 사용량(m³)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³)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 5. 시행일
  - 이 고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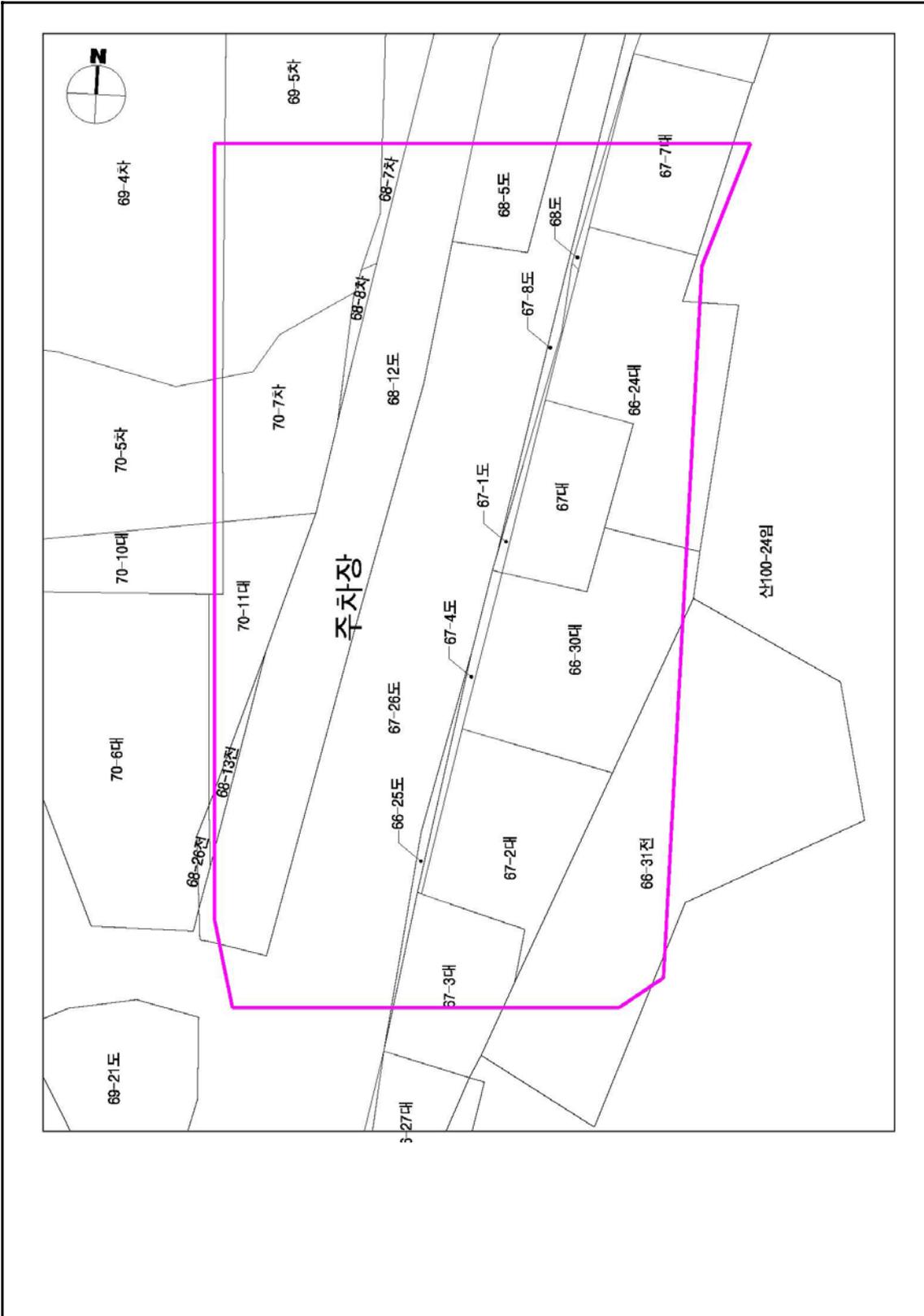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2) 사업의 명칭 :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 나. 사업시행 위치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주차장3
- 다. 사업의 규모 : 주차장면적 4,744.4m²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마. 사업의 기간 : 2007.10.30~2010.6.30
- 바. 사업대상 토지의 소유권 : 서울특별시가 SH공사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68호(2008.7.31)로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8호(2008.11.20)로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07호(2009.1.2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내 주차장3 부지의 “구파발역 환승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6321-4269), SH공사 뉴타운사업본부(☎3410-7565), 은평구 건축과(☎350-139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63호(2001.8.10)로 결정된 「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30차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11.5 속개)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2001.8.10 결정된 「노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노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86,000	증)1,123	87,123	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17호 (1996.11.20)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변경사유
변경	-	동작구 노량진동 46 일대	증)696	• 구적면적 오차보정에 따른 도로면적 증가
변경	①	동작구 노량진동 244-82, 246-79 일대	증)3	• 종전의 구역경계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설선과 일치하도록 조정
변경	②	동작구 노량진동 84-102 일대	증)38	• 구역 남측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자율정비구역과 연계하여 기존 도로의 예상선형 조정
변경	③	동작구 노량진동 85-1,5,34, 92-1 일대	증)168	• 종전의 구역경계가 도시계획시설(도로)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설선과 일치하도록 조정 (가각부분 포함)
변경	④	동작구 노량진동 114-3 일대	증)218	

- 나.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서울역광장~구영동포구청 (노량진동29-10~ 노량진동114-5)	217,734 (7,800)	8,725 (650)	9~13	서고시 제164호 (1984.4.22)	한강로지구 (노량진로변)
기정	③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노량진동240-1~대방동400-5 (동측 : 노량진동54-19~ 노량진동54-14 서측 : 노량진동45-30~ 노량진동47-2)	65,280 (3,012)	2,720 (동측 95 서측 156)	양측12		도림로지구 (장승배기길 변)
변경	③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노량진동240-1~대방동400-5 (동측 : 노량진동54-3~ 노량진동54-14 서측 : 노량진동45-3~ 노량진동47-2)	65,280 (3,012)	2,720 (동측 95 서측 156)	양측12		도림로지구 (장승배기길 변)

주) 면적 및 연장의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용도지구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②	중심지미관지구	-	• 장승배기길의 확폭에 따라 간선가로에 지정된 일반 미관지구의 위치 변경
③	일반미관지구	위치 변경(양측 7.5m 후퇴)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총괄표

유형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4	1,870	18,718	-	-	-	7	1,069	10,472	7	801	8,246
대로	1	170	4,460	-	-	-	-	-	-	1	170	4,460
중로	2	237	3,820	-	-	-	2	237	3,820	-	-	-
소로	11	1,463	10,438	-	-	-	5	832	6,652	6	631	3,786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	주간선 도로	6,490 (97)	노량진역앞 (노량진동 63-12)	구로동 (노량진동 47-2)	일반 도로	상도동길	건고시 제177호 (62.12.8)	장승배기길 서고시제952호 (88.12.6)
변경	대로	3	18	25~40 (36 ~40)	"	6,490 (170)	"	"	"	"		구역 내 폭원변경 (25→36~40)
기정	중로	2	31	15	국지 도로	1,120 (195)	노량진동 (노량진동 114-3)	상도동 (노량진동 119-164)	일반 도로	대림아파 트 서측	총고시 제722호 (36.12.26)	만양로
변경	중로	2	31	15	"	1,120 (195)	"	"	"	"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선일치조정
기정	중로	3	101	12	국지 도로	200 (66)	(노량진동 27-5)	노량진동 267-49	일반 도로	전신전화 국 입구	서고시 제174호 (78.4.25)	
변경	중로	3	101	12	"	134	노량진동 264-1	"	"	"		기점 변경 (구역내→구역외)
신설	중로	2	1	15	국지 도로	(42)	(노량진동 27-12)	(노량진동 264-15)	일반 도로	-		노량진재정비촉진 지구 도로계획반영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430 (141)	(노량진동 31-24)	노량진동 249-68 (노량진동 39-27)	일반 도로	-	서고시 제174호 (78.4.25)	
변경	소로	2	1	8	"	430 (268)	(노량진동 31-15)	노량진동 244-82	"	-		기종점 변경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6 (116)	(노량진동 84-109)	(노량진동 261-16)	일반 도로	-	서고시 제483호 (79.11.23)	
변경	소로	2	2	8	"	116 (76)	(노량진동 240-79)	(노량진동 246-79)	"	-		기종점 변경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3045 (3045)	(노량진동 54-31)	(노량진동 92-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63호 (01.8.6)	
변경	소로	2	3	8	"	"	"	"	"	-		구역내선형조정 (노량진동84- 101일대)
신설	소로	2	4	8	국지 도로	(90)	(노량진동 41-23)	(노량진동 36-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5	8	국지 도로	(93)	(노량진동 113-8)	(노량진동 116-3)	일반 도로	-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 기점 및 종점을 나타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99)	(노량진동 29-12)	(노량진동 31-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212)	(노량진동 45-31)	(노량진동 34-2)	일반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47)	(노량진동 37-11)	(노량진동 39-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4	6	국지 도로	(126)	(노량진동 71-4)	(노량진동 58-3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5	6	국지 도로	(88)	(노량진동 119-205)	(노량진동 116-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6	6	국지 도로	(59)	(노량진동 40-3)	(노량진동 40-32)	일반 도로	-		

(주)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 기점 및 종점을 나타냄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및 신설내용	변경사유
장승배기 길 (대3-18)	장승배기길 (대3-18)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확폭 25m→36~40m	• 장승배기~여의도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장승배기길 일부구간 폭원 확장 계획 반영
만양로 (중2-31)	만양로 (중2-31)	일부 폭원 조정	• 종전 도시계획시설(도로)선과 노량진동 90-11일대 등의 지적선 불일치 구간을 일치토록 조정
중3-101	중3-101	기종점 변경(구역내→구역외)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조정 및 교통계획 반영
-	중2-1	폭원 15m도로 신설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조정 및 교통계획 반영
소2-1	소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m도로 폭원조정 및 구간변경	• 도시계획시설선과 구역경계 일치를 위한 폭원 및 기종점 조정
소2-2	소2-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m도로 구간변경	• 인접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서 조성예정인 15m도로와 연계 하기 위해 기정도로 기종점 조정
소2-3	소2-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m도로 선형조정	• 이면도로의 불규칙한 선형 및 예각 조정
-	소2-4	폭원 8m도로 신설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종전기반시설과 연계 및 녹지축 연결계 획 반영
-	소2-5	폭원 8m도로 신설	• 지구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남북방향 연결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및 신설내용	변경사유
-	소3-1	폭원 6m도로 신설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구 내 교통체계 연계성 확보
-	소3-2	폭원 6m도로 신설	•장승배기길과 이면부를 연결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	소3-3	폭원 6m도로 신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조성 및 녹지축 연결계획 반영
-	소3-4	폭원 6m도로 신설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구 내 교통체계 연계성 확보
-	소3-5	폭원 6m도로 신설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지구 내 교통체계 연계성 확보
-	소3-6	폭원 6m도로 신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조성 및 교통계획 반영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동작구청)	노량진동 47-2번지	8,956	감)648	8,308	서고시 제483호 (79.12.23)	면적 감소
기정	②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동작경찰서)	노량진동 72-352번지	4,779	-	4,779	서고시 제18호 (85.1.16)	변경없음

○ 공공청사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동작구청)	면적감소	•장승배기길 확폭계획(639m <sup>2</sup> ) 및 북측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9m <sup>2</sup> )으로 인한 공공청사부지 일부 도로편입

※ 향후 공공청사 신축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가능할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②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 복지 시설	-	노량진동 62-8번지	384	-	384	동고시 제30호 (96.7.2)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비고
	기정	변경	
가구	-	A,B,C,D,E,F,G,H,I,J	구역 내 간선 및 이면도로를 기준으로 10개 가구로 구분

-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 최대개발규모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 내용		비고
	기정	변경	
간선부	1,500㎡	3,000㎡	기개발지 및 특별계획구역 제외
이면부	1,500㎡	2,0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서참조  
 - 획지선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동개발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2) 건축물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기정	불허용도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li> <li>•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제외)</li> <li>•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li> </ul>	A	구역 전체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li> <li>• 숙박시설</li> <li>• 위락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li> <li>•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제외)</li> <li>•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li> </ul>	B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li> <li>•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제외)</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 온실 제외)</li> <li>• 공공용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제외)</li> </ul>	B1	

구분		내용		비고	
변경	불허 용도	간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ul>	A	구역 전체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ul>	B	

※ 불허용도 적용범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축 시 규정준수

- 절대정화구역 :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00m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변경결정 조서

구분		내용		비고		
기정	권장 용도	간 선 부	전층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li> <li>•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li> <li>• 업무시설</li> </ul>	1	구역 전체
			1층 전면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li> <li>•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li> </ul>		
		이 면 부	전층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li> <li>•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li> </ul>	2	
			1층 전면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소매점</li> </ul>		
변경	권장 용도	간 선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li> </ul>	1	구역 전체	
		이 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학원 및 독서실(당해용도 바닥 면적 500㎡ 미만인 것)</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li> </ul>	2		

※ 권장용도의 인정 :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전체의 용도의 경우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 합 의 2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권장용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

## 다) 건축물의 밀도 변경결정 조서

## ① 건폐율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호

## ② 용적률 변경결정 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량진로변</li> <li>내부대형공공업무시설지</li> <li>특별계획구역(대성학원)</li> </ul>	300%이하	63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승배기길변</li> <li>만년고개길/ 중로3-101호선변</li> <li>8m이상 도로변</li> </ul>	300%이하	600%이하
	6m이상 8m미만 도로변	300%이하	550%이하
	6m미만 도로변	240%이하	550%이하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선도로변 (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 등)</li> </ul>	300%이하	63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li> </ul>	250%이하	500%이하

※ 노량진로변 기존 일반상업지역(노선)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획지에 대하여 기준용적률 600%이하, 허용용적률 800%이하를 편입면적에 대한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 [노량진로변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산식]

·기준용적률

=((일반상업지역(노선)면적×일반상업지역(노선)기준용적률)+(일반상업지역면적×일반상업지역 기준용적률))÷획지면적

·허용용적률

=((일반상업지역(노선)면적×일반상업지역(노선)허용용적률)+(일반상업지역면적×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획지면적

[노량진로변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예시표]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면적	노선상업지역 편입면적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A	1	1,496㎡	833㎡	467%이하	725%이하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
B	2	1,383㎡	299㎡	365%이하	667%이하		
	3	3,053㎡	718㎡	371%이하	670%이하		
C	4	1,067㎡	350㎡	398%이하	686%이하		
	5	2,805㎡	748㎡	380%이하	675%이하		
E	6	2,737㎡	666㎡	373%이하	671%이하		
	7	4,933㎡	397㎡	324%이하	644%이하		
	8	925㎡	507㎡	464%이하	723%이하		
	9	745㎡	112㎡	345%이하	656%이하		
G	11	1,868㎡	449㎡	372%이하	671%이하		
	12	384㎡	306㎡	539%이하	765%이하		
	15	2,541㎡	447㎡	353%이하	660%이하		
H	16	3,934㎡	161㎡	313%이하	637%이하		
	17	1,435㎡	397㎡	383%이하	677%이하		
I	18	1,182㎡	315㎡	380%이하	675%이하		
	19	492㎡	139㎡	385%이하	678%이하		
	20	887㎡	580㎡	496%이하	741%이하		
	21	4,572㎡	119㎡	308%이하	634%이하		
	22	1,801㎡	596㎡	399%이하	686%이하		
J	23	1,523㎡	529㎡	404%이하	689%이하		

※ 위 용적률 적용예시표는 전체 획지면적 및 노선상업지역 편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실제 건축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면적 증감 시 이를 조정하여야 함

## ③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 ○ 기정

항목	내용	적용대상	완화내용	비 고
획지에 관한 사항	공동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 × 0.3	· 맞벽건축의 경우 기준용적률 × 0.15
	획지분할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전층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5	
획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10	
		공개공지(쌓지형공지, 침상형공지, 대상형 공지 등) 조성시	{(제공면적-설치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획지면적의 5%)÷획지면적}×기준용적률	
	전면공지	보도 및 차도확장형 전면공지 설치시	{(제공면적÷획지면적)×2}×기준용적률	
	획지 내 조경	획지 내 조경 (차폐식재, 옥상 조경포함)조성시	[{조경면적(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옥상조경면적은 2/3만적용) -(설치의무면적,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3㎡)}÷ 획지면적] × 기준용적률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제공면적÷획지면적)×기준용적률	
		공공보행통로를 피로티, 실내 및 지하 통행형태로 조성시	{(제공면적÷획지면적)×0.5}×기준용적률	
주차 및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	공동주차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a	· 20m이상도로변 : a=0.10 · 20m미만도로변 : a=0.05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a	· 20m이상도로변 : a=0.10 · 20m미만도로변 : a=0.05
	공용주차장	준수시	{(획지내주차수-법정주차대수)×a/법정주차대수}× 기준용적률	· 20m이상도로변 : a=0.5 · 20m미만도로변 : a=0.3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완화내용은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임
3. 공동건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과 공동건축으로 계획된 획지와 계획되지 않은 획지간 공동건축시에는 공동건축에 의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음
4. 획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 및 조경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 지구에서의 건축선 후퇴공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음

## ○ 변경

## [간선도로변]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획지 계획	획지단위개 발	획지단위 공동개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필지교환	필지교환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 0.2	· 건축면적의 20% 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쌈지형, 침상형공지	위치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위치지정시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침상형구조 : a=1.0 · 개방형구조 : a=1.2
	건축한계선	지침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전면공지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2
추가 계획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7 · 개방형구조 : a=1.5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 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피로티구조 : a=0.5 · 개방형구조 : a=1.0
		보차혼용 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지하 및 고가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광장, 지하보도, 보도육교와 연계 시 부여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하철관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 등 지 하철 관련시설을 건물 내부 또 는 대지 내 설치 시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적)×0.2	
	옥상녹화	준수시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이내적용(법정 조경면적은 제 외) · 학원용도로 개발 시 2배 적용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제 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시 미 적용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빗물이용시 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 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 0.02이상 설치 시 적용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05이내
	신재생 에너지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절약	1등급(3개항 목중 1개항목 준 수시)	· 기준용적률 × 0.08	·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2등급(3개항 목중 1개항목 준 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미관지구 건축  
선후위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인  
센티브를 적용.  
3. 기본항목(획지단위개발, 공개공지, 쌈지형·침상형공지, 건축한계선, 최고높이계획)을 모두 준수 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150%)를 부여.  
4. 건축한계선의 추가 계획시 부여되는 용적률인센티브는 간선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 한하고, 기준용적률의 1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변 획지 등의 개발계획과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6.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  
체 불가함.  
7. 에너지절감율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8.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9.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이면도로변]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공동 개발 및 맞벽 건축	공동개발 (지정/권장)	지정 및 권장 사항 준수시	· 기준용적률 × α	·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 5필지 이상 : α=0.2
	맞벽건축	-	· 기준용적률 × 0.1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 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2
	쌈지형, 침상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침상형구조 : α=1.0 · 개방형구조 : α=1.2
	건축한계선	지침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전면공지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2	
대지 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0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α	※지하 및 고가공공보행통로는 지하 철, 지하 광장, 지하보도, 보도육교 와 연계 시 부여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대지면 적)×0.2	
	옥상녹화	준수시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 적용 (법정 조경면적은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시 미적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이상 설치 시 적용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05이내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 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절약	1등급(3개항 목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8	·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환경 친화적 건축물	에너지절약	2등급(3개항 목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인센티브를 적용.  
 3. 기본항목(건축한계선, 최고높이계획)을 모두 준수 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100%)를 부여.  
 4.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6. 에너지절감율 :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7. 에너지성능지표 :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8. 친환경건축물인증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 [노량진동 54-3일대 획지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예시안]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인센티브	비고
대지내 공 지	지하철관련	준수 시	· 대지 안으로 지하철출입구 조성 시	100%	-
	침상형공지	규모·조성 형태 준수시	· 침상형공지 설치 시	60%	· 침상형공지 최소면적 - 구역면적의 5%이상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준수 시	20%	-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 지상층 연면적 20%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50%	· 공연장 및 전시장은 지하설치 가능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등	준수 시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준용	69%	· 서울시 지침사항 준수
인센티브합계		-	-	299%	-
기준용적률		-	-	372%	-
인센티브합계 + 기준용적률		-	-	671%	· 종전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별 가중평균 적용

- 주) 1.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침상형 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이 경우 용적률 완화는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비율보다 최소 2%이상 초과 시 인센티브 부여  
 2. 지하철출입구는 최소규모 이상의 침상형공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며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및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3.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4.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라) 건축물의 높이 변경결정 조서

구분		최고높이	
기정	최고 높이	• 노량진로변 • 특별계획구역(대성학원)	75m이하
		• 장승배기길변	50m이하
		• 노량진로변 내부 대형공공업무시설부지 • 만년고개길, 중로3-101호선변	40m이하
		• 8m이상 도로변 • 6m이상~8m미만 도로변 • 6m미만 도로변	35m이하
변경	최고 높이	• 간선도로변(노량진로, 장승배기길)	90m이하
		• 만양로변, 동작경찰서	50m이하
		• 이면도로변	40m이하

※ 간선도로변 획지단위개발 시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면도로변은 도로사선제한 적용

※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공동개발(지정) 또는 공동개발(권장)에 따라 건축 시 이면도로변 도로사선제한을 적용치 않음

마)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분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비고	
기정	• 간선도로변	노량진로, 장승배기길, 간선변 막다른 도로	3m	-	•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
	• 이면도로변	8m미만 도로변	1m미만 1~3m미만	-	• 이면부(보행 및 차량공간 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m	-	
		공공보행통로 조성부분	-	3m 4m	• 보도형 조성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변경	• 간선도로변	노량진로, 장승배기길	3m	-	• 보도형 조성 (간선부 보행구간 확보)
	• 이면도로변	8m미만 도로변	1~2m	-	• 차도형 조성 (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이투스학원 이면부통로	4~6m미만	-	• 차도형 조성 (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KTF이면부 고시원밀집지일대	1m미만	-	• 차도형 조성 (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만양로 신한은행 이면부일대	1m	-	• 보차혼용형 조성 (이면부 보행 및 차도 구간 확보)
		공공보행통로 조성부분	-	3m	• 보도형 조성 (노량진동 56-9 일대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 ② 건축물의 형태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고	
건축물 형태	고층부 탐상형	•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권장 • 고층부 탐상형 권장을 통한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폭 20m이상 도로변	권장
	저층부 형태	• 투시형 서터 및 투시벽(벽면적 50%이상) 설치 • 1층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구역전체	규제

## ③ 건축물의 색채 및 외관

구분	계획내용	적용구역	비고	
건축물 색채 및 외관	재료/ 색채	•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원색의 사용은 금하도록 함	폭 20m이상 도로변	규제
	야간조명	• 간선변 10층이상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투시형 벽면설치시 내·외부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함 •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 대규모 개발지 및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에 대하여 권장	구역전체	권장
기타 사항	옥외 광고물	• 외부에 노출이 심하거나 건축물과의 이질감이 심한 옥외 광고물에 대한 규제 • 통합간판 설치 유도	구역전체	규제
	담장 및 옹벽처리	• 가급적 담장설치를 지양하도록 하며 부득이할 경우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 계단식으로 조성	구역전체	권장
	자연 지반보존	• 저층부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투수성 재료로 조성 •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	구역전체	권장
	중수도/ 빗물이용	• 중수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구역전체	권장
	옥상녹화	• 도시열섬화 현상 완화, 도시미관 증진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따라 조성	구역전체	권장
	녹색 주차장	• 잔디 등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구역전체	권장
	신재생 에너지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투자 또는 계획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	구역전체	권장
에너지 절약	•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대책마련	구역전체	권장	

3) 기타사항에 대한 변경결정 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쌈지형공지	• 보행통로 및 각각부	15개소	26개소	개발규모 확대에 따른 쌈지형공지 추가지정	
전면 공지	• 구역전체	간선도로변	3m	3m	보도 및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이면도로변	3m 이하	1~4m이하	이면도로여건을 감안한 차도 및 보도로 조성
공공보행통로	• 보행동선 단절부 및 보행공간확보 필요 지역	E	-	4m 4m	노량진로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연계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신설
		E와F 사이	4m	-	보행자우선도로 신설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폐지
		G	3m	3m	이면부의 원활한 보행연결을 위해 종전계획 사항 존치
		I	4m	-	도로신설, 획지계획조정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폐지
		J	3m	-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변 각각부 및 주요전면도로변(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교차로에 면한 대지(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 간선변으로의 차량 직접출입 규제로 안전한 교통소통 및 차량흐름의 효율성 상승 도모
보행자 우선도로	• 동작구청과 대성학원 사이의 이면도로를 지역주민들의 통행 편의성제고를 위해 동서방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폭원6m) • 노량진로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계획의 보행녹지축을 연결하는 이면도로 2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폭원 6m,8m) • 만양로 이면도로변의 보행자를 위주로 한 통행체계 확립	•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쾌적한 통행공간 확보 및 차량과 보행자의 조화로운 소통 유도 • 주요지역 및 이면도로체계와 보행흐름 연계
보차 혼용통로	• 노량진동 40-31일대의 획지단위 개발시기에 따른 맹지발생방지를 위해 한시적 보차혼용통로 운영 • 노량진동 116-2일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위하여 8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운영 • 노량진동 57-1일대의 노량진로와 이면도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6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운영	• 노량진로,만양로 및 이면도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 신설로 차량과 보행자의 보다 원활한 통행 유도

## ① 차량 출입불허구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B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C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E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G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획지계획조정으로 간선도로변 차량출입구 1개소 설치
H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I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J	차량출입금지구간	차량출입금지구간	변경없음

## ② 공동주차통로(폐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진구역	4개소	-	적정개발규모 확보에 따른 개별적인 주차공간 조성이 가능하므로 막다른 도로 및 이면부 공동주차통로 폐지

## ③ 보행자전용도로(폐지)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E와F 사이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도로구간 및 선형변경

④ 보행자우선도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B와 C사이	-	보행자우선도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보행복지축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노량진로와 연결하는 남북방향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H와 I사이	-	보행자우선도로	
C-D,E-F 사이	-	보행자우선도로	대성학원~동작구청 사이의 보행우선공간 조성
J 이면	-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 위주 이면도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

⑤ 보차혼용도로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C,H,J	-	보차혼용도로	노량진로,만양로 및 이면도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차 혼용도로 신설로 차량과 보행자의 보다 원활한 통행 유도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대성학원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46-6일대	4,398	증)535	4,933	구역면적 증가
신설	②	보건산업진흥원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57-1일대	-	증)3,934	3,934	보건산업진흥원 이전에 따른 신설

나)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결정사유
변경	①	대성학원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46-6일대	4,933	지구중심기능강화 및 교육서비스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대성학원 일대의 간선변 필지 편입 등 획지계획 조정으로 구역면적 증가
신설	②	보건산업진흥원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57-1일대	3,934	국가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지의 지방이전이 확정되어 이진 후 합리적인 부지활용을 위한 특별 계획구역 신설

다) 대성학원 특별계획구역

① 구역 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대성학원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46-6번지 일대	4,933	-

②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 동측 일부 장승배기길 도로 편입(기부채납)</li> <li>• 구역 남측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후 기부채납</li> <li>※ 전체 기부채납을 10% 이상 공공기여 유도</li> </ul>
건축물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허용도</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장용도</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li> </ul>
건축물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폐율</li> <li>• 6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허용용적률</li> <li>• 300% / 630%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한용적률</li> <li>• 800% 이하</li> <li>※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li> <li>• α=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높이</li> <li>• 90m 이하</li> </ul>
기타사항에관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li> <li>• 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변 : 3m</li> <li>• 구역 남측 보행자우선도로변 : 3m</li> <li>• 구역 동측 이투스학원 일대 이면도로변 : 이투스학원 획지선으로부터 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공지</li> <li>• 씹지형공지(권장)</li> <li>- 장승배기길변 및 구역 남측 보행자우선도로변 지정된 위치에 씹지형공지 조성</li> <li>• 공개공지</li> <li>-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씹지형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li> <li>• 전면공지</li> <li>-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간선도로변 및 이면가로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공지로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통로</li> <li>•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조성(폭원 4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 불허구간</li> <li>• 노량진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출입구</li> <li>• 이면도로변 차량출입구 지정(폭 8m 이상)</li> </ul>

- ※ 종전노선상업지역은 면적별로 가중평균하여 기준 및 허용용적률을 산정하고, 상한용적률의 경우 가중치 적용
-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 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 건축물의 높이가 10층 이상일 경우 5층 이상부분에 대해 고층부담상형을 권장

## ③ 대성학원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예시안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인센티브	비고	
대지내 공 지	지하철관련	준수 시	·대지 안으로 지하철출입구 조성 시	80%	-
	침상형공지	규모·조성 형태 준수시	· 침상형공지 설치 시	30%	· 침상형공지 최소면적 - 구역면적의 5%이상
	쌈지형공지	규모·조성 형태 준수시	· 쌈지형공지 설치 시	30%	· 쌈지형공지(개방형) 최소 면적 - 구역면적의 5%이상
	건축한계선	진면공지	· 건축한계선 준수 시	20%	-
대지내 통 로	보행자우선 도로	준수 시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후 기부 채납 시	40%	·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쾌 적한 보행이 가능한 개방 형으로 조성
	공공보행 통로	준수 시	· 폭원 및 위치준수 시	20%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진층권장	· 지상층 연면적 20%이상 확원 을 제외한 권장용도 도입 시	30%	· 공연장 및 전시장은 지하 설치 가능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등	준수 시	·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준용	70%	· 서울시 지침사항 준수
인센티브합계	-	-	-	320%	-
기준용적률	-	-	-	324%	-
인센티브합계 + 기준용적률	-	-	-	644%	· 종전 상업지역에 대한 면 적별 가중평균 적용

- 주) 1.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침상형 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이 경우 용적률 완화는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비율보다 최소 2%이상 초과 시 인센티브 부여
2. 지하철출입구는 최소규모 이상의 침상형공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며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및 접근이 가능하여야 함
3.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4.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 라) 보건산업진흥원 특별계획구역

## ① 구역 개요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보건산업진흥원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57-1번지 일대	3,934㎡	-

## ②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시설	공공공지	• 구역 남측 일부 소(국)2-3 도로 편입(기부채납) • 구역 남측 공공공지 조성 후 기부채납 ※ 전체 기부채납율 16% 이상 공공기여 유도
		건축물용도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물밀도	• 60% 이하 • 300% / 630% 이하 • 800% 이하 ※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1+1.3×가중치×α)이내 • α=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노량진로변 : 3m
	대지내 공지	• 썸지형공지(권장) - 노량진로변 지정된 위치에 썸지형공지 조성 • 공개공지 -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썸지형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공지를 간선도로변 및 이면가로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공지로 조성
	대지 내 통로	• 지정된 보차혼용통로 조성(폭원 6m)
	차량출입구	• 노량진로변 차량출입구 지정(폭 6m 이상)

※ 종전노선상업지역은 면적별로 가중평균하여 기준 및 허용용적률을 산정하고, 상한용적률의 경우 가중치 적용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 시 원인가(개발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건축물의 높이가 10층 이상일 경우 5층 이상부분에 대해 고층부탑상형을 권장

※ 노량진지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방안으로서 지상2층에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공간을 500㎡ 이상으로 조성토록 하고 구체적 규모 및 운영방식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③ 보건산업진흥원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예시안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인센티브	비 고
대지내 공 지	쌈지형공지	규모·조성 형태 준수시	·쌈지형공지 설치 시	40%	·쌈지형공지(개방형) 최소면적 - 구역면적의 10%이상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준수 시	20%	-
	지하철관련	준수시	·대지 안으로 지하철 출입구, 환 기구 등 지하철관련시설 조성 시	60%	-
대지내 통 로	보차혼용통 로	준수 시	·폭원 및 위치준수 시	59%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 할 수 있는 구조로 차량과 보 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개방형 으로 조성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지상층 연면적 50%이상 업무시 설, 교육연구시설 도입 시	60%	·공연장 및 전시장은 지하설치 가능하며 이 경우 전체연면적 의 20%이상일 시 인정
			·지상층 연면적 10%이상 문화 및 집회 시설 또는 생활권수련 시설 설치 시	20%	
환경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등	준수 시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기준 준용	65%	·서울시 지침사항 준수
인센티브합계		-	-	324%	-
기준용적률		-	-	313%	-
인센티브합계 + 기준용적률		-	-	637%	·종전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별 가중평균 적용

- 주) 1. 향후 건축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조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쌈지형 공지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이 경우 용적률 완화는 건축법에 의한 의무면적비율보다 최소 2%이상 초과 시 인센티브 부여
2.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 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3. 관계도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9) 및 동작구 도시관리과 (☎02-820-138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제86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정책과(☎2171-2569)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7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47호(2008.7.24)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372호(2009.2.26)로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된 용산구 한남동 727-56 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한남동 727-56외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 명 칭 :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토지이용계획(㎡)				건축면적(㎡)	연 면 적(㎡)	비 고
계	문화시설	도로	녹 지			
11,222.0	10,826.0	300.0	66.0	5,906.06	29,492.65	지하4층/지상4층

-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쇼파크 (대표이사 김동업)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4-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바. 사업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0

개월 이내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문화정책과,2171-2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5호(1979.01.0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0호(2008.06.05)로 대학 면적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에 위치한 삼육대학교의 건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 교	대학 (삼육대학교)	노원구 공릉동 26-21 일대	173,142	-	173,142	'79.1.9	변경없음

3.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 교 (삼육대학교)	공릉동 26-21 일대	계	173,142	-	173,142	
			건축부지	30,056	(증) 19	30,075	
			녹지부지	36,053	(증) 154	36,207	
			조경부지	25,107	(증) 1,133	26,240	
			도로부지	57,885	(증) 930	58,815	
			주차장부지	4,908	(증) 946	5,854	
			광장부지	2,807	(감) 1,519	1,288	
			운동장부지	16,326	(감) 1,663	14,663	

나. 건축물의 범위 :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8% 이하	18% 이하	48% 이하	48%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4.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노원구 도시개발과(전화 950-3869)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공 고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8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11118	갑일전자통신	황상우	서울 서초구 잠원동 39-1 동화빌딩 201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3.16~6.15)
2	111648	㈜시스윌	김연수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15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3.16~6.15)
3	111959	나인에스솔루션㈜	강달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6-5 신아빌딩 3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3.16~6.15)
4	112212	㈜진홍월드와이드	이창주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16 벽산디지털밸리 703-1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3.16~6.15)
5	111240	우전시스템㈜	권영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비동 13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9.3.16~6.15)
6	111647	㈜아이티에스컨버전스	신춘식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씨티 2동 701호	등록기준미신고 변경신고지연	영업정지1월15일 영업정지10일 (09.3.20~5.14)
7	150538	신성이앤지㈜	박태원	서울 서초구 내곡동 1-2094	기준미달(기술계 1, 자본금)	영업정지1월 (09.3.20~4.19)
8	200925	㈜켄우	정경문	서울 금천구 가산동 489-11 대륭테크노타운 603호	기준미달(자본금)	영업정지1월 (09.3.20~4.19)
9	110964	케인컴㈜	이윤상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1 우성빌딩 212호	기준미달 (기술계1)	영업정지1월 (09.3.20~4.19)
10	112152	에틴시스템㈜	송태구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78 아이티벤처타워 서관 12층	기준미달 (자본금실효)	영업정지1월 (09.3.20~4.19)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제15조, 제66조제2호의3, 제66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0조제1항

3. 행정처분 일자 : 2009. 3.16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91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 1. 허가번호 : 제2009 - 208호
- 2. 허가년월일 : 2009년 3월 9일
-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도자문화협회
-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40-2 201호
- 5. 대표자 : 강 경 식(36.5.10)
- 6. 설립목적 : 도자인들간의 교류 및 도자예술가와 도자애호가·기타 문화예술계 사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

- 1. 대상 : 성북03번, 성북08번 노선 운행계통

노선번호	업체명	구분	운행대수	기·종점	배차간격	사유
성북03	성삼운수	노선연장	4대	경동고등학교~북정노인정	7~9	삼선동 삼선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제공
성북08	길음운수	노선단축	3대	신안아파트~길음역	5~6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 단축으로 길음뉴타운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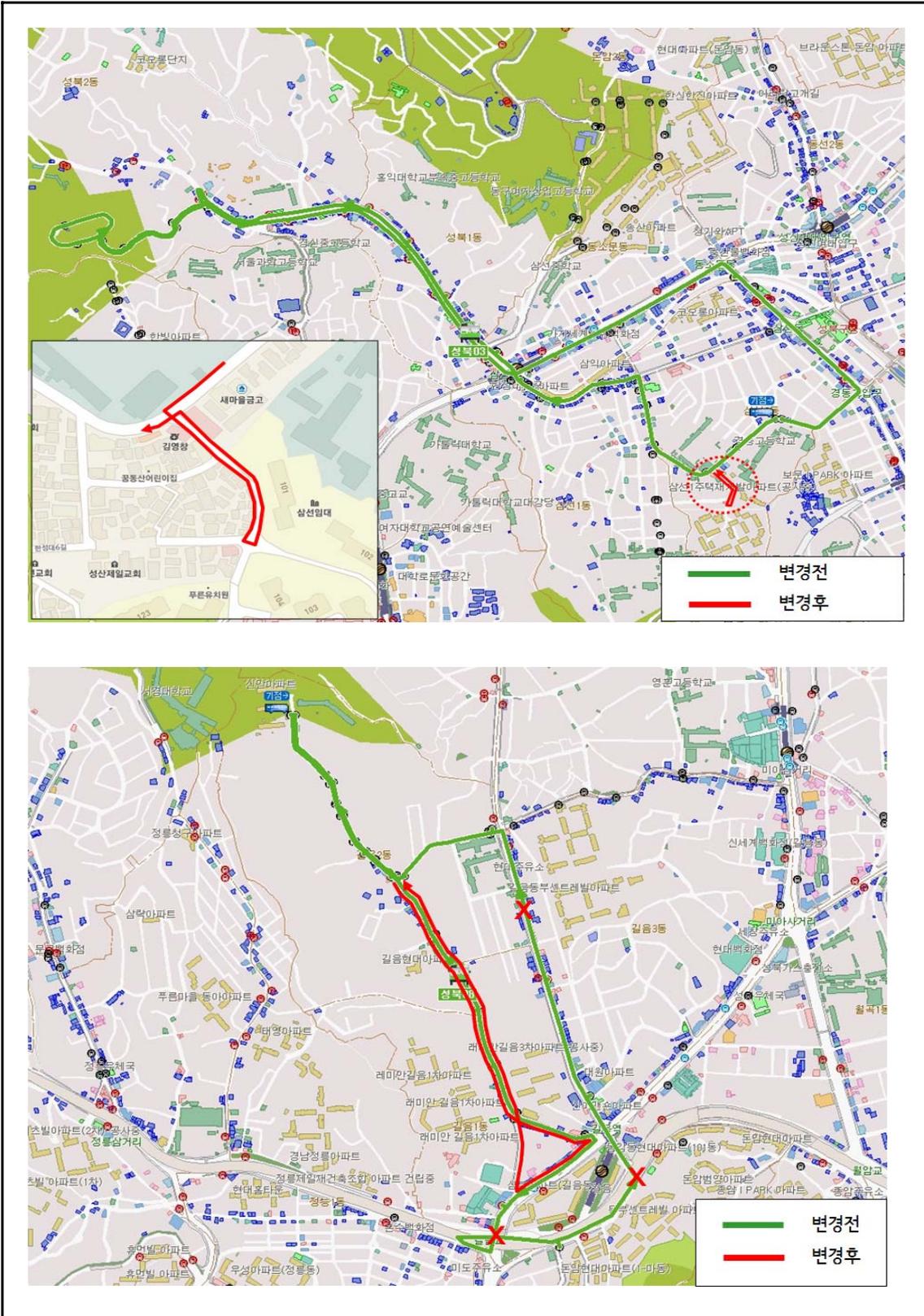
- 2. 마을버스운행노선의 운행계통 중 운행대수와 운행횟수, 배차간격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지역교통수요에 비해 운행차량이 과다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음
- 3. 노선의 등록현황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담당관(전화 : 6360-4560) 및 성북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노선도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bus.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 한국 도자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 시킴으로써 한국 도자예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28호  
마을버스 노선변경(성북03번, 성북08번)  
운행계통기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 노선변경(성북03번, 성북08번) 운행계통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36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종	등록일자
서울 S-2-316	베스코	주민정	송과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32-201	780422- 2*****	전문 감리업	2009. 3.16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기업지원담당관(02-3707-9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3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개편된 직제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부서명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직인등록 (폐기)일자	등록(폐기) 사유
건축기획과	건축기획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서체 1.8cm × 1.8cm		2009.3.18	과명칭변경 등록
	건축기획과 일상경비출납원 (전자이미지)	한글서체 1.8cm × 1.8cm		2009.3.18	
	건축기획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서체 1.8cm × 1.8cm		2009.3.18	
건축과	건축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서체 1.8cm × 1.8cm		2009.3.17	과명칭변경 폐기
	건축과 일상경비출납원 (전자이미지)	한글서체 1.8cm × 1.8cm		2009.3.17	
	건축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서체 1.8cm × 1.8cm		2009.3.17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  
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  
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mm×297mm(한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38호

관광사업자(일반여행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관광진흥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한 취소

6. 청문실시

2. 당사자 :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험의 가입 등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5.에 의한 취소(3차위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8조(보험의 가입등)
  - 행정처분의 기준(관광진흥법시행령제 33조제1항)2. 개별기준 위반사항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관광진흥담당관	담당자	이남호
주 소 (전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85-3(알리안츠빌딩 10층) (☎ 3707-9430, 팩스 3707-9429) 이남호				
일 시	2009년 4월 14일 09:00부터 18:00까지(근무시간내)				
장 소	관광진흥담당관 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담당관			
	성 명	관광자원팀 최기홍			

당사자					
연번	여행업 등록번호	업 체 현 황			비 고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1	301	락희항공여행사(주)	조성봉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오피스텔1016	
2	552	(주)동아항공여행사	김문정	중구 서소문동 58-12 통운빌딩 10층	
3	703	(주)초이스투어	박기동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808호	
4	707	원여행클럽(주)	원치승	송파구 방이동 41-3 지역사회교육회관 1층	
5	833	(주)블루넷투어스	하기남	중구 소공동 91-1 서울센타빌딩 1607호	
6	881	리조트인더월드(주)	최병호	종로구 원남동 66-21 보령빌딩 10층	
7	1031	유엔차이나(주)	김시우	중구 무교동 11 광일빌딩	
8	1034	선황여행사(주)	탕한창	마포구 서교동 465-11 동진빌딩 303호	
9	1051	(주)코딜에셋	최장일	서초구 반포동 748-1 청호타워 302호	
10	1055	코리아두루여행사(주)	강진락	서대문구 홍은3동 274-20 하나빌딩	
11	1111	휴라이프(주)	유호성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빌딩 1506호	
12	1155	신광여행사(주)	조미혜	강남구 삼성동 157-8 엘지트윈텔 1차 1303호	
13	1125	(주)리얼투어테크	이상국	중구 무교동 32-2 남강빌딩 703호	
14	1191	(주)뉴신정트래블	홍종국	종로구 도림동 115 삼육빌딩 604호	
15	서울-1	(주)잼투어	김영일	강남구 논현동 3-15 평화빌딩 301호	
16	서울-8	(주)지티케이	김공진	강서구 등촌동 641-11 청림빌딩 703호	
17	서울-38	(주)광토케이티	이진석	마포구 마포동 35-1 현대빌딩 15층	
18	서울-40	(주)아이엠투어	김교영	종로구 당주동 로얄빌딩 12층	
19	서울-52	(주)라미여행사	장제민	마포구 동교동 156-2 마젤란21 오피스텔 1205호	
20	서울-106	위예듀케이션(주)	편승준	종로구 연지동 136-70 세원빌딩 5층	
21	서울-112	지원매니아(주)	김영철	강남구 논현동 61-5	
22	서울-116	파워캠프(주)	이석호	강서구 등촌동 700 플러스존빌딩 4층	
23	서울-158	(주)로얄레블루션티앤티	김광옥	강남구 논현동 231-7 2층	
24	서울-179	(주)울트라투어	변홍균	종로구 당주동 5 로얄빌딩 81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39호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종	등록일자
서울 S-2-317	(주)해안종합 건축사사무소	윤세한	강남구 논현동 278-13 해안빌딩	110111- 1039779	전문 감리업	2009. 3.17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기업지원담당관(02-3707-9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42호  
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2009-5호
2. 법인명칭 : 재단법인 「구호희망복지재단」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길20(구  
로동569-3)
4. 대표자 : 박 선 호
5. 허가일 : 2009.3.13
6. 설립목적 :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  
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을 목적

7. 목적사업

- 복지시설 및 푸드마켓/뱅크 수탁운영
-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  
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4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관순  
교육사업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부  
금품모집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 모집 등록내역

등록 번호	모 집 자	소 재 지	모집목적	모집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모 집 방 법
제2009- 6호	사)유관순 교육 사업회	중구 태평로1가 뉴서울호텔17층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억원 (현금)	2009.3.11 ~ 2009.12.31	2009.3.11 ~ 2009.12.31	ARS, 은행지료, 모금함 설치 등

□ 기부금품 모집 등록 변경 내역

등록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모집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모집방법
						당초	변경	
제2009-7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송파구 신천동 11-6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 어업인 지원	10억원 (현금)	2008.2.27 ~ 2009.2.26	2008.2.27 ~ 2009.2.26	2008.2.27 ~ 2009.9.1	모금창구 개설을 통한 모금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02-731-66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52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2009 - 209호
2. 허가년월일 : 2009년 3월 17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대한민국의가족미술협회
4.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신당3동 349-189
5. 대표자 : 김 부 자(43.2.10)
6. 설립목적 : 모든 서울시민들이 미술을 생활화하고 전문미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문화 시민으로서의 소양함양 및 미술인구 저변확대와 세계적인 '미술의 도시 서울' 건설에 기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57호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경관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의 계획방향 및 목표
  - 가. 계획방향
    - 부드럽고 역동적인 친환경 야간경관도시 서울
  - 나. 목표
    - 서울만의 개성 있는 경관 창출 (Identity)
    - 시민의 심미적 요구 증진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Beauty)
    - 야간생활 안전 향상(Safety)
2.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관리 방안
  - 가. 경관유도
    - 빛의 인프라 정비를 위한 건축물, 도로, 오픈스페이스, 문화재, 도시 기반시설 조명 등의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마련 (5개부문, 11개분야)
      -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건축물 : 폭12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 및 특정적용 건축물 (특정적용 : 고층건축물(21층 이상), 대규모건축물(10,000㎡ 이상), 미디어 파사드 적용 건축물(30㎡이상 미디어 파사드가 적용된 건축물)
        - 도로 : 폭12m 이상의 도로 및 기타도로(교량, 교차로, 터널)
        -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시

- 지정 문화재
- 빛의 특화를 위한 특화요소 및 특화구역
  - 특화요소 : 빛의 랜드마크, 빛의 스카이라인, 파노라마 야간경관
  - 특화구역 : 도심, 남산, 한강 및 여의도, 테헤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마곡지구
- 자율적 운영 및 보완 후 협의·자문 제도로 확대 검토
  -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설계자의 자가점검 통해 허가기관에 제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1~2년 시범적용)
  - 야간경관 특화구역내 건축물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도시경관 담당부서와 사전협의제도 도입
- 나. 경관관리
  - 빛의 특화를 위한 야간경관 특화구역 (야간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 연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 서울디자인위원 심의 및 자문, 소위원회 운영
- 다. 경관협정
  -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자율적 경관 계획
  - 주민자율기구 운영을 통한 유지관리
- 라. 경관사업
  - 경관형성 필요지역에 대한 경관사업 추진
  - 야간경관 인프라정비, 특화, 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리·지원체계 확보
- 마. 기본경관계획과 연계
  - 경관기본 및 중점 관리구역
    - 야간경관 설계지침 반영 : 체크리스트 작성

- 야간경관중점관리구역(특화구역)
  - 특화구역 내 각종 심의대상 건축물은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설계서 작성 제출
- 자치구별 야간경관 상세계획 수립
  - 지역별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특정지역의 경관계획은 자세한 실정과악과 주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자치구 차원에서 수립함
- 3.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에서 관리할 대상 구역
  - 가. 특화요소 및 특화구역 (생략)
  - 나.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해당범위 구역 (생략)
    - ※ 특화요소 및 특화구역,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 게재생략
-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공공디자인담당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서울특별시 야간경관계획 게재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의 “디자인 서울”
  - 야간경관경관계획 관련사항 문의
    -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공공디자인담당관(전화 : 02-6361-3464, FAX : 02-6361-347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62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청문통지 공시  
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취소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에 의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통지서 내용을 공시송달 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연번	당 사 자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1	110086	(주)남지정보통신	오해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0-11 로우폴리스 307호	기준미달(자본금 실효)	등록취소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3호, 동법시행령 제50조(영업의 정지등) 제1항 별표8, 동법 제68조의3(청문),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3. 청문실시

- 기관명 : 서울특별시청 (부서명: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홍양표 전자우편 yphong@seoul.go.kr)
- 주 소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02-6360-4992, FAX 02-3707-9029)
- 일 시 : 2009년 4월 30일 13:00부터 17:00까지(4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담당관실
- 주재자 소속 및 직위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격차개선팀장 성명 : 이방우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FAX, e-mail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홍양표 ☎6360-4992, e-mail : yphong@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65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일
일반측량업 02-01-2087	(주)성훈측량 토목시스템	김관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27-7 ☎02-855-3082	2009. 3.19.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66호**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

측량법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 변경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상 호	대표자	변경 등록 사항		등 록 일
		변경 전	변경 후	
(주)소기아 코리아	김연광	대표이사 미요시료지 이사 마루야마겐이치로	대표이사 김연광 사내이사 와타나베히토시 이재욱	2009.3.20.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68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2009 - 210호
2. 허가년월일 : 2009년 3월 19일
3. 법인명칭 : 재단법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89 석마빌딩 3층
5. 대 표 자 : 김 철 리

6. 설립목적 : 국제적인 공연예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일반시민에게는 국내외의 우수한 공연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74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경미한 사항)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1. 승인일자 : 2009년 3월 16일
2. 관리계획의 주요내용

연번	시 설 명	시행자	위 치	토지형질변 경면적(m <sup>2</sup> )	건축연면적 (m <sup>2</sup> )	비 고
1	중량폐기물중간 처리시설	중량구청장	중량구 망우동 34-6일대	4,950 (변동없음)	9,081.1 (증713.1)	건축면적 증가
2	서울만남의광장 증설	한국도로공사	서초구 원지동 10-16일대	13,845 (증1,205)	2,464.24 (증217.93)	LPG충전소 신축 사무실 일부 증축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정책과  
및 해당 자치구 관계부서(공원녹지과)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09-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54호(2005.8.25)로 결정 고시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간 공동개발을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종 로 구 청 장

1.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결정 조서

획지	기 정			변 경			
	지번	면적 (㎡)	획지계획	지번	면적 (㎡)	획지계획	공동개발
23	관철동 5-13	395.0	3필지 공동개발	관철동 5-13	395.0	3필지 공동개발	8필지 공동개발 지정
	관철동 38-1	102.5		관철동 38-1	102.5		
	관철동 40-1	58.8		관철동 40-1	58.8		
24	관철동 33-6	238.0	단독개발	관철동 33-6	238.0	단독개발	
25	관철동 38-2	142.1	4필지 공동개발	관철동 38-2	142.1	4필지 공동개발	
	관철동 38-3	4.0		관철동 38-3	4.0		
	관철동 38-4	29.1		관철동 38-4	29.1		
	관철동 39-1	4.6		관철동 39-1	4.6		

2. 기타사항 : 변경없음
3. 관련도면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4.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건축과(☎731-142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고시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같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 종로구고시 제2009-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432호(1963.07.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

구공고 제2009-80호(2008.02.0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11호(2009.03.0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궁정동 13-3 ~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물건조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고시』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 (☎731-14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종로구청장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궁정동 13-3~효자동 40-1간 도로개설사업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구 궁정동 13-3 ~ 효자동 40-1간  
라. 사업의 규모 : B=6m, L=255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길 50  
바. 사업기간 : 인가일부터 2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 (☎731-1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 건 조 서

○ 공 사 명 : 공정동 13-3 ~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계 지	당 조					변 경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용 면적(m <sup>2</sup> )	성 명	소 유 자 소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용 면적(m <sup>2</sup> )	성 명	소 유 자 소
1	종로구 효자동 40-1	건물 (1층)	블럭조	121	이승주 문강분	파주시 월롱면 영테리 465-1	건물 (1층)	블럭조	121	이승주 문강분	파주시 월롱면 영테리 465-1
		건물 (2층)	블록조/성글	91			건물 (2층)	블록조/성글	91		
		가건물(1층)	블럭조	32			가건물(1층)	블럭조	32		
		대 문	목조	1식			대 문	목조	1식		
2	종로구 효자동 172-1	담 장	벽돌조(2.1m)	1식	진재홍 외 14	종로구 효자동 172-1 성주빌라	담 장	벽돌조(2.1m)	1식	진재홍 외 14	종로구 효자동 172-1 성주빌라
3	종로구 효자동 43	건물 (1층)	벽돌조/외증	18	김석자	종로구 신교동 39-3	건물 (1층)	벽돌조/외증	18	김석자	종로구 신교동 39-3
		건물 (1층)	블럭조	31			건물 (1층)	블럭조	31		
4	종로구 효자동 171	창고(장독대)	블럭조	28	김충자	종로구 효자동 171	창고(장독대)	블럭조	28	김충자	종로구 효자동 171
		화장실(1층)	블럭조	24			화장실(1층)	블럭조	24		
		가건물(2층)	블럭조	28			가건물(2층)	블럭조	28		
		정화조		1식			정화조		1식		
5	종로구 효자동 48	건물 (1층)	벽돌조	06	송경화	종로구 효자동 172-1 성주빌라 3-304	건물 (1층)	벽돌조	06	송경화	종로구 효자동 172-1 성주빌라 3-304
		대 문	철계	1식			대 문	철계	1식		
		담 장	벽돌조(2.1m)	1식			담 장	벽돌조(2.1m)	1식		

일련 번호	소 계 지	당 초				변 경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 면적(㎡)	성 명	소 유 자 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 면적(㎡)	성 명
6	종로구 효자동 50-7	건물 (2층)	철근Con'c조	0.7	김진희	건물 (2층)	철근Con'c조	0.7	김진희	종로구 효자동 50-7
		건물 (1층)	철근Con'c조	0.7		건물 (1층)	철근Con'c조	0.7		
		가건물(1층)	블럭조	1.6		가건물(1층)	블럭조	1.6		
		대문	철제/슬라브	1식		대문	철제/슬라브	1식		
7	종로구 효자동 100	담장	벽돌조(2.0m)	1식	손진홍	담장	벽돌조(2.0m)	1식	손진홍	종로구 효자동 100
		주차장출입구	철제샷타/기 등 (석재붙임)	1식		주차장출입구	철제샷타/기 등 (석재붙임)	1식		
		담장	벽돌조(2.0m)	1식		담장	벽돌조(2.0m)	1식		
		수목	도로변	6주		수목	도로변	6주		
8	종로구 효자동 50-23	건물 (1층)	벽조	9.0	이지열	건물 (1층)	벽조	9.0	이지열	종로구 효자동 50-8
		주차장출입구	철제샷타	1식		주차장출입구	철제샷타	1식		
		대문		1식		대문		1식		
		건물 (1층)	목조/외층	11.4		건물 (1층)	목조/외층	11.4		
9	종로구 효자동 50-6	건물 (1층)	목조/외층	6.6	최정수	건물 (1층)	목조/외층	6.6	최정수	종로구 효자동 50-6
		대문	목조/기둥 (벽돌스라브)	1식		대문	목조/기둥 (벽돌스라브)	1식		
		담장	벽돌조(2.2m)	1식		담장	벽돌조(2.2m)	1식		
		건물 (1층)	벽돌조	11.5		건물 (1층)	벽돌조	11.5		
10	종로구 효자동 50-5	건물 (2층)	벽돌조/외층	8.3	유심평	건물 (2층)	벽돌조/외층	8.3	유심평	종로구 효자동 50-5
		정화조		1식		정화조		1식		
11	종로구 효자동 93	건물 (1층)	철근Con'c조	1.0	박구선	건물 (1층)	철근Con'c조	1.0	박구선	광진구 구의동 243-8 B01호
12	종로구 효자동 92	건물 (1층)	벽돌조/성글	8.2	윤상남	건물 (1층)	벽돌조/성글	8.2	윤상남	종로구 신교동 51-1
		건물 (1층)	벽돌조/외층	10.7		건물 (1층)	벽돌조/외층	10.7		
13	종로구 효자동 61-1	건물 (1층)	벽돌조/외층	10.7	변인식	건물 (1층)	벽돌조/외층	10.7	변인식	종로구 효자동 61-1

일련 번호	소 계 지	당 초				변 경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 면적(㎡)	성 명	소 유 자 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용 면적(㎡)	성 명					
14	종로구 효자동 62	장독대, 보일러실	블럭조	7.7	노봉구 종로구 효자동 62	장독대, 보일러실 물탱크	블럭조	7.7	노봉구 종로구 효자동 62	소 유 자 소					
		대문	목조/슬라브	1식		대문	목조/슬라브	1식							
		담장(외부)	벽돌조(2.5m)	1식		담장(외부)	벽돌조(2.5m)	1식							
		담장(내부)	블럭조(1.8m)	1식		담장(내부)	블럭조(1.8m)	1식							
		수목(大)		5주		수목(大)		5주							
		수목(小)		13주		수목(小)		13주							
		식재구조물	정원경계부	1식		식재구조물	정원경계부	1식							
		정화조		1식		정화조		1식							
		조경석		1식		조경석		1식							
		기름탱크	자하	1식		기름탱크	자하	1식							
		도시가스		1식		도시가스		1식							
		가건물	차고 비가림막	1식		가건물	차고 비가림막	1식							
		15	종로구 효자동 74	건물(1층)		벽돌조 (타일붙임)	48	유봉희 강남구 신사동 555-36 3층 505			건물(1층)	벽돌조 (타일붙임)	48	유봉희 강남구 신사동 555-36 3층 505	소 유 자 소
				건물(1층)		목조/외층	84				건물(1층)	목조/외층	84		
보일러실 장독대	벽돌조(석재 붙임)			38	보일러실 장독대	벽돌조(석재 붙임)	38								
16	종로구 효자동 73-3	화장실(2), 창고	벽돌조(석재 붙임)	120	정익현 문의숙 종로구 효자동 73-3	화장실(2), 창고	벽돌조(석재 붙임)	120	정익현 문의숙 종로구 효자동 73-3	소 유 자 소					
		대문	철재+목조	1식		대문	철재+목조	1식							
		정화조		1식		정화조		1식							
		도시가스		1식		도시가스		1식							
				1식		포룸(보안장치)		1식							

사업 위치도



**◆ 종로구고시 제2009-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건설부고시 제432호('63.07.01)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8-18호(2008.05.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한 【익선동 5~34-8간 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 다. 사업의 개요

- 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 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실시계획고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목과(☎731-040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종로구청장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익선동 5~34-8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금회)	시설결정고시	지적고시	비고
종로구 익선동 5~익선동 34-8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공사	B=4m, L=160m (B=4m, L=80m)	건설부고시 제432호 ('63.07.01)	건설부고시 제432호 ('63.07.01)	

-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종로구 삼봉길 50)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부터 2년
- 바. 변경내용 : 물건조서 변경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 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목과(☎731-0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변경인가 조서

사업시행자 : 종로구청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공사명 :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목	수용 면적 (㎡)	성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 제 지	지 목	수 용 면 적 (㎡)	성 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 제 지	지 목	수 용 면 적 (㎡)	성 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1	종로구 익선동 33-30	도	1671	여수진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25 우성아파트 105-1206						변경없음						변경없음		
				김우상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3 역삼 럭키아파트 102-1408						변경없음						변경없음		
				홍승순	서울 강남구 수서동 738 동익 아파트804-1402						변경없음						변경없음		
				최경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223-1001						변경없음						변경없음		
2	종로구 익선동 33-33	대	210	변지석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 타워 팰리스 D-911						변경없음						변경없음		
				최계영	서울 마포구 연남동 478-14						변경없음						변경없음		
				문홍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09-1502						변경없음						변경없음		
				이중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85 삼풍아파트 22-1006						변경없음						변경없음		
3	종로구 익선동 33-34	대	177	노봉환	서울 종로구 익선동 33-5						변경없음						변경없음		
				이경숙	서울 종로구 익선동 33-5						변경없음						변경없음		
4	종로구 익선동 33-35	대	172	윤금옥	서울 종로구 익선동 33-6						변경없음						변경없음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목	수용 면적 (㎡)	성명	소 유 자		종류	성명	주 소	이 해 관 계 인		종류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5	종로구 익선동 33-36	대	134	최수길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8 한강극동아파트 103-804										변경없음
6	종로구 익선동 33-37	대	24	이계찬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4 하여울청구아파트 116-504										변경없음
7	종로구 익선동 33-38	대	0.9	이상원	서울 종로구 연건동 271-10	근처 당	(주)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을지로 지점					변경없음
8	종로구 익선동 33-39	대	5.5	최육진	서울 종로구 익선동 33-18										변경없음
9	종로구 익선동 33-40	대	7.0	김명자	서울 종로구 익선동 33-21	근처 당	(주)한국 주택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장안동지원센터					변경없음
10	종로구 익선동 33-41	대	30.7	홍성택	서울 종로구 익선동 33-22										변경없음

### 물 건 변경 인 가 조 서

사업시행자 : 종 로 구 청 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공 사 명 : 익선동 5~34-8간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당						변						경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용 면적 (㎡)	성명	소 유 자	종류	성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 면적 (㎡)	구조 및 규 격	물건의 종 류	소재지	종류	성명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1	종로구 익선동33-5	건물	목조/지상 1층	16.5	이경숙 (8/10)	종로구 익선동 33-5												
		담장	너비1.6* 높이2.6 (블록)	1식														
		대문	너비1.8* 높이2.2 (목조)	1식														
2	종로구 익선동33-1 5	건물	목조,세멘 트연화조/ 지상1층	0.3	이상원	종로구 연건동 271-10	근저당	(주)조흥 은행	중구 남대문로1가 14성수동지점									
		담장	너비3.5*높 이2.2 (블록)	1식														
		가스 계량기		3식														
		전력 계량기		1식														

일련 번호	당 초						변 경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용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종 류	이 해 관 성 명	이 해 관 주 소	소 유 자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종 류	이 해 관 성 명	이 해 관 주 소	
3	종로구 익선동 33-18	건물	목조/지상 1층	37	근저당	종로구 익선동 33-18	취유진	(주)국민 은행	중구 남대문로2가 9-1 문화문지점	변경없음					
		대문	너비1.9*높 이2.1(목조)	1식											
		가스 계량기		1식											
		전력 계량기		1식											
4	종로구 익선동 33-21	건물	목조/지상 1층	1.5	근저당	종로구 익선동 33-21	김명자	(주)한국 주택 은행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장안동지원센터	변경없음					
		대문	너비1.4*높 이2.1(목조)	1식											
5	종로구 익선동 33-22	건물	목조/지상 1층	42.6	근저당	종로구 익선동 33-22	홍성택	(주)스프 리스	종로구 여의도동 33-22 신갈리 48-3	변경없음					
		대문	너비1.4*높 이2.1(목조)	1식											
		가스 계량기		2식											
		정화조		1식											
		화장실		1식											
		건물	목조/지상 1층	500											
대문	너비1.4* 높이2.1 (목조)	1식													
가스 계량기		2식													
정화조		1식													
화장실		1식													
건물	목조/지상 1층	49													



◆ **중구고시 제2009-13호**

**도시관리계획(옥외광고물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50호(2006.12.2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9항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중 구 구 청 장

- I. 결정(변경)취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옥외광고물 조항을 조정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 II. 지구단위계획(옥외광고물) 변경결정 조서 : 게재 생략  
(비치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II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함.
- IV. 비치장소 및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2260-1931)에 관계

서류 비치 및 열람

◆ **중구고시 제2009-1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41번지 앞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2260-1903)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중 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취지  
삼일로 및 을지로 변 완화차로 설치로 보도 상에 위치한 을지로2가 정거장 출입시설을 이설하는 사항으로, 완화차로 설치로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가)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2가 141번지앞	205	4,811	증) 131	4,942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완화차로 설치로 출입구 변경 (이설) 및 장애인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설치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입체적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을지로2가 정거장	중구 을지로2가 141번지앞	-	증 14.8	14.8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 입체적결정범위(출입구 일부) - 면적 : 14.8㎡(평면투영 면적) - 지상1층 : A=14.8㎡ / H = +28.2m ~ +26.9m(해수면기준) - 지하1층 : A=14.8㎡ / H = +26.9 ~ +18.8m

나. 관계도면 : 생략(중구청 도시관리과 및 토지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 **광진구고시 제2009-22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2009-3호 (2009.01.06)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우리구 자양동 224-15호 외 1필지상 대영연립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광진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주택재건축사업,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상 호 :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대표자 : 대영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동렬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3-1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사업장 위치 : 광진구 자양동 224-15,-24호

나. 대지면적 : 2,930㎡

다. 건설규모 : 지하2층, 지상16층, 아파트 2동, 57세대, 연면적 8,915.65㎡, 건폐율 22.89%, 용적률 224.54%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9.03.18.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토지이용 현황(㎡)					건축시설의 규모 및 이용현황						
총 계	대 지		공공시설			건축규모		아파트 공급내역			
	소계	공동주택	소계	도로	건축후퇴선	동수	연면적 (㎡)	계	조합원	일반분양	임대
2,930	2,930	2,930	0	0	※[대지북측,동측:2m (공공보도조성), 대지남측(구의로변:3m+10m)]	2	8,915.65	57	25	32	0

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명세 : 해당 없음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주택과 (☎450-765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중랑구고시 제2009-1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호(2007.1.25)로 재정비 결정고시된 상봉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구 및 획지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8조와 제68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중 랑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

구역명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A4	3,338.2	3,338.9	기정	중화동 208-4,9,15	1,892.2	획지계획선 변경 없는 단순면적 정정
				변경	중화동 208-4,9,47	1,892.9	
				기정	중화동 208-11	961.9	해당없음
				기정	중화동 208-3,15	484.1	해당없음

3. 관계도서 : 생략(중랑구청 도시개발과 비치도서와 같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개발과(☎ 490-338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중랑구고시 제2009-13호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중 랑 구 청 장

1. 사업명 : 유한·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가. 유한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안동준(중랑구 목2동 245-158)
  - 나. 한양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송금남(중랑구 목2동 236-4)
  - 다. 월드건설(주)(강남구 역삼동 809 월드

- 메르디앙빌딩
- 3. 사업시행기간 : 2003. 09 ~ 2009. 03
- 4.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2동 236-1외 34필지
- 5. 준공인가내역
  - 가. 대지면적 : 5,808.5㎡
  - 나. 연 면 적 : 17,656.57㎡
  - 다. 규 모 : 지하1층, 지상5~12층, 아파트 4개동 141세대
  - 라. 준공인가일자 : 2009. 03. 19.
- 6. 준공인가도면 : 생략[중랑구청 주택과 ☎(02)490-3380~3]

◆ **성북구고시 제2009-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 1. 성북구고시 제2004-166호(2004. 12.30)로
- 나. 사업내역

사업명칭	사업시행지	사업의 규모	비고
성북동1가 75-2호 가각설치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1가 75-2호	가각설치공사	

- 다.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2009. 12. 31.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167호(2009.02.26)로 열람공고된 『성북동1가 75-2호 가각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와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3973), 건설관리과(☎920-340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길 14  
 사업의 명칭 : 성북동1가 75-2호 가각정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권리의종류 및내용	
1	성북동 75-2	도로	38.5	38.5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권리의종류 및내용	

###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길 14  
 사업의 명칭 : 성북동1가 75-2호 가각정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성북동1가 75-2	건물	스레트	건물 : 38.5	주택	조홍석	성북동1가 75-2호					

◆ **성북구고시 제2009-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성북구고시 제1995-48호(1995. 06.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168호(2009.02.26)로 열람공고된 『하월곡동67-44~43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와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와 제100조 규정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3973), 건설관리과(☎920-340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사업내역

사업명칭	사업시행지	사업의 규모	비고
하월곡동67-44~43간 도로확장공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67-44~43간	도로확장공사 폭(B) = 4m→8m 연장(L) = 40m	

- 다.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2009. 12. 31.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길 14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67-44~43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권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하월곡동 06-82	하천	55	55		국(건설부)				

###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길 14  
 사업의 명칭 : 하월곡동 67-44~43간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하월곡동 67-91	건물	세멘조	무허가 건물 : 55	주택	정광순	하월곡동 67-91				

◆ **강북구고시 제2009-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7.11)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09-14호(2009.3.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수유2동 273~318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가. 사업개요

-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강 북 구 청 장

구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규 모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비고
당초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수유동 273~318간 도로확장)	강북구 수유동 273-37~318-11	폭원 : 5~6m 연장 : 150m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 (72.7.11)	
변경	변	경	없	음	

- 나. 사업의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변경없음)
-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10. 12. 31.(변경없음)
-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마. 관련도서 : 강북구청 도로과에 비치
-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과(☎901-5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수유동 273~318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내용	
1	당초 변경	도로 변	256	256		강북구 수유동318-3	한승오				
				경		없	음				
2	당초 변경	대 대	36 35	36 35		강북구 수유동519-21	송건섭				
				경		없	음				
3	당초 변경	대 변	28	28		강북구 수유동519-21	송건섭				
				경		없	음				
4	당초 변경	대 변	14	14		강북구 수유동240-21	유경자	중구 남대문로2가111-1	우리은행	근저당권	
				경		없	음				
5	당초 변경	대 변	2	2		강북구 수유동318-3	한승오				
				경		없	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6	당초	대	68	68		중구 충무로1가52-5	동방생명보험(주)					
	변경	변		경		없음						
7	당초	대	4	4		중구 태평로2가150	삼성생명보험(주)					
	변경	변		경		없음						
8	당초	대	3	3		중구 충무로1가52-5	동방생명보험(주)					
	변경	변		경		없음						
9	당초	답	1	1	1/2	서대문구 대조동79-8	김제룡					
					1/2	종로구 신문로2가1-124	박복득					
	변경	변		경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사서(변경)

수유동 273~318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내용	
당초	강북구수유동 273-38	창고	스리브/벽돌	1		강북구 수유동 273-38	김학봉				
		담장		1식							
		대문		1식							
변경		변	경	없		음					

**◆ 강북구고시 제2009-2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8-13호 ('08.3.13)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8-85호('09.1.8)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09-124호('09.2.26)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우이동 154~161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
- 나. 사업개요

- 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과(901-5836) 및 건설관리과(901-5814)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구분	사업의 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지의 위치	비고
당초	수유4동 154~161간 도로확장공사	폭 6m 연장 340m	강북구 우이동 161-35~ 우이동 154-60	
변경	우이동 154~161간 도로확장공사	폭 6m 연장 285m (감 55m)	강북구 우이동 161-35~ 우이동 154-99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길 12(수유동 192-59)
-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우이동 154~161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당초	우이동 161-29	도로	13	13	1/3	성동구 옥수동 387	오주현				
	변경		변경없음			1/3	성동구 옥수동 290	김인수				
2	당초	우이동 160-5	도로	102	102		성동구 옥수동 248-1	정춘응				
	변경		변경없음				종로구 신문로2가 92	함진자				
3	당초	우이동 160-6	도로	63	63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79-46	신영이				
	변경		변경없음				강북구 우이동 150-3	이문상	중구 회현동1가203	한빛은행	근저당권	
4	당초	우이동 150-12	대	1	1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	당초	우이동 150-11	대	15	15	2/7	서대문구 홍제동454유원하나아파트106/703	김일옥				
	변경		변경없음		3/7	강북구 우이동 150-7	이양분					
6	당초	우이동 150-10	대	1	1		성북구 정릉동 239정릉풍림아이 원아파트101/302	박태영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변경		변경없음									
7	당초	우이동 산33-1	임	83	83		강북구 우이동 252	차승현				
	변경		변경없음									
8	당초	우이동 152-1	잡	13	13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친도교 유지재단				
	변경		변경없음									
9	당초	우이동 153	임	941	297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친도교 유지재단				사업 제외 구간
	변경	우이동 153	임	941	0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0	당초	우이동 153-1	임	71	71		종로구 경운동 88	재단법인 친도교 유지재단																				
	변경	우이동 154-70	변경없음	7	7																							
11	당초	우이동 154-70	도로	7	7		은평구 녹번동 20-36	이병헌																				
	변경	우이동 154-71	변경없음	3	3																							
12	당초	우이동 154-71	도로	3	3		강북구 우이동 154-52	이임성																				
	변경	우이동 154-72	변경없음	15	15																							
13	당초	우이동 154-72	도로	15	15		도봉구 쌍문동 486-11	김종기																				
	변경	우이동 154-72	변경없음	39	39																							
14	당초	우이동 154-107	대	39	39	43.05/281	강북구 우이동 154-12 우이 파크빌 201	윤석훈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45.87/281	강남구 청담동 46-2 호환오피 스텔 404	이지운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8	(주)우리은행	근저당권										
													43.05/281						도봉구 쌍문동 524-87 우이빌라 1동 210호	김종석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22-5	은평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45.87/281											강북구 우이동 154-12 우이파크빌 302	정부금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8	(주)우리은행	근저당권
													36.07/281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14	변경	변경없음																				
													강북구 우이동 154-12 402	전성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54-12 401호	서울특별시 중구정	압류					
																		도봉구 창동 461-15	황덕자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9 현대아파트 103-107	권민	가등기권
강북구 우이동 154-12 우이파크빌 201	윤석훈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강남구 청담동 46-2 호환오피스텔 404	이지윤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근저당권													
										강북구 우이동 154-12 우이파크빌 302	정부금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9	유민화	근저당권								
15	당초	우이동 154-109	대	2	2							154 -41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81-2	박금규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222-5	은평신용 협동조합	근저당권					
																		강북구 우이동 154-12 우이파크빌 302	정부금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우리은행	근저당권
강북구 우이동 154-12 우이파크빌 201	윤석훈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근저당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5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6.51/281	강북구 우이동 154-12 402	전성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154-12 401호	배상운	전세권	근저당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9-2	(주)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근저당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9 현대아파트 103-107	권민	가등기권		
16	당초	우이동 154-108	대	52	52	40.58/281	도봉구 창동 461-15	황덕자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619	부서출납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154-13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17	당초	우이동 155-2	도	248	248		은평구 녹번동 28-46	김지명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18	당초	우이동 155-7	전	3	3		은평구 녹번동 28-41	김지명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우이동 154~161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사업 시행자 : 강북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1	당초	우이동 148-6	건물1층	연와조/ 평육개	15	성북구 장위동 212-1	조흥식							
			건물2층	연와조/ 평육개	15									
			건물	연와조/ 평육개	1									
	변경	변경없음												
2	당초	우이동 149-1	건물	세멘트벽/세멘 와즙	11	강북구 우이동 149-1	안삼웅							
	변경	변경없음												
		당초	우이동 150-1	가건물								6		
3	당초	우이동 150-1	창고		2	강북구 우이동 150-1	차용우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4	당초	우이동 150-2	건물	목조/세멘트와콤	15	변경없음	강북구 우이동 150-2	최말남			
	변경										
5	당초	우이동 150-6	건물	목조/세멘트와콤	1	변경없음	성북구 정릉동 239 정릉풍림아이원 아파트 101/302	박태영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건물	목조/세멘트와콤	31						
	보일러실		1								
6	당초	우이동 154-60	건물	연외조	3	변경없음	종로구 필운동 284-3	신점순			사업 제외 구간
			보일러실		2						
	변경	우이동 154-60	건물 보일러실	연외조	0						

**◆ 노원구고시 제2009-8호**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  
**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58호(2008.3.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월계2 주택재건축정비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m <sup>2</sup> )	비 고
기 정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43,303	

다. 정비계획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3,303	-	43,303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43,303	-	43,303	100.0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3,303	-	43,303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425	감)295	9,130	21.1	
	도 로	6,954	감)249	6,705	15.5	
	어린이공원	2,471	감)46	2,425	5.6	구역면적의 5%이상 확보 2,165.2m <sup>2</sup> < 2,425.0m <sup>2</sup>
택지	소 계	33,878	증)295	34,173	78.9	
	획 지 1	33,083	증)307	33,390	77.1	공동주택용지
	획 지 2	795	감)12	783	1.8	종교용지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3	61	25~31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500 (202) <sup>2)</sup>	강북구 미아동 42	노원구 하계동 287		
기정	중로	2	(1) <sup>1)</sup>	15~2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9	대로 3-(1)호선 285-4 도	중로 2-(3)호선 626-19 도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14	중로 2-(4)호선 280-1 전	노원구 월계동 655-11 대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5	중로 2-(1)호선 626-19 도	중로 2-(2)호선 645-2 도		
기정	중로	2	(4)	17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6	대로 3-61호선 285-1 대	소로 3-(1)호선 280-1 전		

- ※ 1) 임시 시설번호 부여
- 2) 구역내 도로연장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	월계동 645-12번지일원	2,471	감) 46	2,425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월계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3,303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239 (7)	-	-	239 (7)	-	

나)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면적(m <sup>2</sup> )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계획/상한)	층수
명 칭							
소계	기정	33,878	-	-	-	-	-
	변경	34,173(증 295)					
획지1	기정	33,083	월계동 633-31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46이하 /250이하	최고30층 이하
	변경	33,390(증 307)					
획지2	기정	795	월계동 277-25 번지 일대	종교용지	50 이하	250이하 1)	-
	변경	783(감 15)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 세대수 : 745세대(임대112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98세대(임대68세대), 26.6% - 전용면적 60㎡~85㎡이하 : 369세대(임대44세대), 49.5% - 전용면적 85㎡초과 : 178세대, 23.9%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5.4%					
		변경 ○ 총 세대수 : 745세대(임대112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97세대(임대68세대), 26.5% - 전용면적 60㎡~85㎡이하 : 369세대(임대44세대), 49.5% - 전용면적 85㎡초과 : 179세대, 24.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6.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역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구역전체에 3m 계획					

1) 기존고시시 오키300%이하→250%이하(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50%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적용 기준		비고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 출 근 거	
개 발 가 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a) 이하 • 계획용적률 : 210% • a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 후 면적	기정 • 개발가능용적률 = 250%이하 = 210%×(1+1.3×0.2435) = 276.48 • a =8,056㎡/33,083㎡ = 0.2435 • 적용개발가능용적률 =245.68%<250%	• 기존 국·공유지 (1,369㎡)는 기부채 납비율에서 제외
		변경 • 개발가능용적률 = 250%이하 = 210%×(1+1.3×0.2325) = 273.47 • a =7,763㎡/33,390㎡ = 0.2325 • 적용개발가능용적률 =245.77%<250%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기정	39,207.80㎡/33,083.00㎡=118.51%
		변경	39,207.80㎡/33,390.00㎡=117.42%
	계획 용적률	기정	81,279.09㎡/33,083.00㎡=245.68%
		변경	82,061.33㎡/33,390.00㎡=245.77%
	증가된 용적률	기정	245.68-118.51=127.17
		변경	245.77-117.42=128.35
증가용적률 25%	기정	127.17%×25%=31.79%	
	변경	128.35%×25%=32.09%	
연면적 환산	기정	33,083㎡×31.79%=10,517.09㎡	
	변경	33,390㎡×32.09%=10,714.85㎡	
임대주택 확보계획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 10,667.24㎡</li> <li>세대수 : 112세대</li> <li>-전용59.98㎡ : 68세대(60.7%)</li> <li>-전용84.98㎡ : 44세대(39.3%)</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면적 : 10,736.41㎡</li> <li>세대수 : 112세대</li> <li>-전용59.98㎡ : 68세대(60.7%)</li> <li>-전용84.98㎡ : 44세대(39.3%)</li> </ul>	

-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 321세대,</li> <li>• 계획 : 745세대</li> <li>• (증) : 424세대</li> </ul>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노원구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노원구청  
주택과(☎ 950-3860)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은평구고시 제2009-1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 7. 2)  
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연신내 제1종지  
구단위계획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280호(2006. 8.17)로 재정비 결정된 구산

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획과 (☎02-350-138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6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 획지계획변경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

-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내용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단독개발	단독개발	공동개발	
연신내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조동 186-22외 1필지	획지	대조동 186-22 (면적:131.6㎡)	대조동 186-54 (면적:124.0㎡)	대조동 186-22, 186-54 (면적:255.6㎡)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단독개발→공동개발)

- 구산생활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명	위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내용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공동개발	단독개발	단독개발	공동개발	
구산생활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산동 196-3외 3필지	획지	구산동 196-3, 3-51, 3-1 3-50 (면적:853.2㎡)	구산동 196-3 (면적:338.8㎡)	구산동 3-51 (면적:231.4㎡)	구산동 3-1, 3-50 (면적:283㎡)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공동개발→단독개발, 공동개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다. 관계도면 : 생략(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양천구고시 제2009-1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2009년 3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1. 변경결정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본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

하철5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오목교정거장)	양천구 목동 405일대	7,202	증 40.4	7,242.4	'90.10.19. 건설부고시695	•경미한 변경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3. 관계도면 : 생략(양천구 균형개발과 비치도면과 같음)

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및 의견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4.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2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 양천구고시 제2009-16호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11.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0호(2009.03.12)로 재정비촉진계획[신정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양천구 균형발전추진반-1091호(2007.03.26)로 조합설립 인가된 신월·신정 뉴타운 제1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06-17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1,418.40㎡  
가. 택 지 : 7,153.40㎡

나. 기반시설

구 분	도 로	공 원	공공공지
면 적	2,906.60 m <sup>2</sup>	821.40 m <sup>2</sup>	276.80 m <sup>2</sup>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8-11번지 1층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608-11번지 1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09) 및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2602-1510)에 별도비치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60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09년 3월 18일

7.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월·신정뉴타운 제1구역3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순)

9.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	구 분	택 지
대지면적		7,153.40 m <sup>2</sup>
건축면적		1,815.59m <sup>2</sup>
건 폐 율		25.38%
연 면 적		25,678.62m <sup>2</sup>
용 적 륜		232.04%
층수(높이)		지하2/지상8~17층(54.40m)
세 대 수		173
주 용 도		공동주택(조합원, 일반분양 아파트 및 임대주택)

10. 주택의 규모 등 주택 건설계획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m <sup>2</sup> )										
				40.24	52.80	59.95	59.96A	59.96B	59.98	80.66	84.98	98.30	102.63	111.93
계	공동주택	3	173											
분양	공동주택	2.5	142			15	6	8	25	1	84	1	1	1
임대	공동주택	0.5	31	23	8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청에 무상 귀속 : 4004.80m<sup>2</sup>  
(도로:2,906.60m<sup>2</sup>, 공원:821.40m<sup>2</sup>, 공공공지:276.80m<sup>2</sup>)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 국·공유지 매각시 결정

12. 기타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09) 및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3지구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2602-1510)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양천구고시 제2009-17호  
성림연립재건축 사업계획변경승인

1. 양천구 신월3동 142-14번지 지상 성림연립재건축주택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이수웅)과 (주)금하이엔씨(대표 권상진)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성림연립재건축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

고 같은법 제33조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양천구청 주택과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 26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성립연립재건축주택사업  
나. 사업시행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3동 142-14번지

- 용도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항고도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 대지면적 : 9,261.0㎡
- 건축면적 : 2,832.24㎡
- 건 폐 율 : 30.58%
- 연 면 적 : 22,461.82㎡
- 용 적 륜 : 178.44%
- 규 모 : 지하1층 지상7층 6개동 155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다. 사업계획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공 동 사업주체	성립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조정애 (주)금하이엔씨 대표 윤일중	성립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이수웅 (주)금하이엔씨 대표 권상진	
	양천구 신월3동 142-14호 서초구 서초동 1640-8	양천구 신월3동 142-14호 서초구 서초동 1640-8	
시 공 자	(주)금하이엔씨 대표 윤일중	(주)금하이엔씨 대표 권상진	
	서초구 서초동 1640-8	서초구 서초동 1640-8	
사업기간	2004. 06. ~ 2008. 05.	2004. 06. ~ 2009. 03.	
기 타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확장</li> <li>○ 어린이놀이터 시설 계획 및 조경면적(계획, 시설) 변경</li> <li>○ 기계실, 전기실 면적 변경</li> <li>○ 지상, 지하층 교통체계 변경</li> <li>○ 완화차선 변경(2개소⇒1개소)</li> <li>○ 아파트 내·외장재료 변경 및 부대복리시설 내장재료 변경</li> <li>○ 에어컨 실외기 위치변경, 담장설치계획 변경 등</li> </ul>		

라. 건축선(한계선) 지정(관리)

- 「건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
  - 사업부지 북측 8미터 도로변을 2미터~4미터 후퇴하여 2미터 폭으로 보도를 조성하고 2미터 폭으로 완화차선 설치(별첨위치 및

현황도 참조).

◆ 영등포구고시 제2009-1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8-14호 (2008.03.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공고 제2008-158호(2008.03.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08-20호(2008.04.0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영등포구 신길동 1166-1번지, 신길7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영 등 포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66-1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2) 명칭 : 신길7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 다. 면적 및 규모
  - 당초 : 면적 529.3㎡, 평면주차장 23면
  - 변경 : 면적 529.3㎡, 평면주차장 20면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1년(2008.04.03 ~ 2009.04.02)
  - 변경 : 2008.04.03 ~ 2010.04.30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3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조서(변경)

## 1. 편입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별첨1] 세부 조서 참조

## 가. 토지 조서

연번	위치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당초)		소유자(변경)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29.3	529.3	9명				
1	영등포구 신길동 1166-1	대지	529.3	529.3	최영환외 8명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유권 이전 (2008.5~6월)

## 나. 건축물 조서

## ○ 벽돌조 슬래브 지붕 3층 연립주택(1동 9세대)

연번	위치	동수	면적(m <sup>2</sup> )		소유자(당초)		소유자(변경)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702.16	702.16	9명				
1	영등포구 신길동 1166-1	1	1층 175.54	1층 175.54	최영환 외 8명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유권 이전 (2008.5~6월)
			2층 175.54	2층 175.54					
			3층 175.54	3층 175.54					
			지하실 175.54	지하실 175.54					

[별첨 1]

토 지 조 서 (변 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신길7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

연 번	지번	호수	지목	대지권 비율 (㎡)	소유자		당초			변경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신길동 1166-1	1층 101호	대	529.3분의 588	최영환	양천구 목동 925 무동신시가지(아) 721-1208								
2	"	1층 102호	대	529.3분의 588	이상욱	양천구 신월동 1032 방원예뜨랑아파트 101-701								
3	"	1층 103호	대	529.3분의 588	김동일	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12-2								
4	"	2층 201호	대	529.3분의 588	이성환	양천구 신월동 1040 신월2차미소지음 302-1203								
5	"	2층 202호	대	529.3분의 588	최지연	강서구 내발산동 702-7 천우캐슬아파트 302호	(주)우리은행 (대방동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2007.10.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유권 이전 (2008.5~6월)	
6	"	2층 203호	대	529.3분의 589	이복의	강서구 내발산동 702-7 천우캐슬아파트 302호	중소기업은행 (우장산역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2008.1.24					
7	"	3층 301호	대	529.3분의 588	이정순	광명시 하안동 30번지 고층주공(아) 1003동 1201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석촌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근저당권 1993.7.6					
8	"	3층 302호	대	529.3분의 588	최진석	마포구 망원동 470-2 노아아크빌 703호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7-2	근저당권 2007.11.27					
9	"	3층 303호	대	529.3분의 588	이계명	영등포구 신길동 1166-1 호광연립 303호								

### 건 물 조 서 (변 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신길7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연번	지번	호수	종류	면적 (㎡)	구조	소유자			당초				변경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이해 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1	신길동 1166-1	101호	연립주택	58.22	벽돌조 슬래브지붕	최영환	양천구 목동 925								
			1층 지하실	19.41											
2	"	102호	"	58.22	"	이상욱	양천구 신월동 1032								
			1층 지하실	19.41											
3	"	103호	"	59.11	"	김동일	충남 연기군 남면 진의리 12-1								
			1층 지하실	19.70											
4	"	201호	"	58.22	"	이성환	양천구 신월동 1040								
			2층 지하실	19.41											
5	"	202호	"	58.22	"	최지연	강서구 내발산동 702-7	(주)우리은행 (대방동지점)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2007.10.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유권 이전 (2008.5~6월)
			2층 지하실	19.41											
6	"	203호	"	59.11	"	이복의	강서구 내발산동 702-7	중소기업은행 (우장산역지점)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2008.1.24				
			2층 지하실	19.70											
7	"	301호	"	58.22	"	이정순	광명시 하안동 30번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석촌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1993.7.6				
			3층 지하실	19.41											
8	"	302호	"	58.22	"	최진석	마포구 광원동 470-2	영등포농업협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7-2	근저당권	2007.11.27				
			3층 지하실	19.41											
9	"	303호	"	59.11	"	이재명	영등포구 신길동 1166-1	호광연립 303호							
			3층 지하실	19.70											

위 치 도



위치	영등포구 신길7동 1166-1 호강연립주택
----	-------------------------

철거대상 건축물



**◆ 서초구고시 제2009-19호**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계획시설사업) 위치**  
**· 규모 등 변경인가**

2009년 3월 26일  
 서 초 구 청 장

1. 건설부 고시 제108호(1975.6.23)의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제47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고,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19-3,1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계획시설사업)
  - 2) 명칭 : (주)센트럴시티
3. 사업의 규모
  - 대지 면적 : 59,149.40㎡
  - 건축연면적 : 267,000.02㎡ (지하5층, 지상33층)

○ 변경인가 총괄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대지면적	59,149.40	59,149.40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267,268.26	267,000.02	감 268.24	
지상 연면적	140,492.50	140,711.13	증 218.63	

- 변경인가내역(증축 및 용도변경 등) : 별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신달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5. 사업시행기간 : 2009.3월 ~ 2009.9.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해당없음.
  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9. 관련도서 : 생략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교통운수과(02-2155-7184)로 문의바랍니다.
- 변경인가내역(증축 및 용도변경 등)
- 시설변경(자동차정류장시설)

- 변경면적 : 167.86㎡(주시설 → 편익시설) (단위:㎡)

층 별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감
	지상 1층	주시설 (대합실)	7,896.84	7,836.38	감 60.46
	지상 1층	편익시설(식당 등)	2,197.47	2,257.93	증 60.46
	지상1층 중층	주시설(사무실)	1,625.46	1,518.06	감107.40
	지상1층 중층	편익시설(식당 등)	234.72	342.12	증107.40

○ 증축 등 (비시설) (단위:m<sup>2</sup>)

구 분	위 치	면 적	용 도	비 고	
합 계		감 268.24		(연면적)	
증축	소 계	증 327.77			
	판매시설	지하 1층	109.14	판매시설(백화점)	Sunken복개
	판매시설	1층 중층	135.74	판매시설(백화점)	
	숙박시설	7 층	82.89	숙박시설(호텔)식당	
철거	소 계	감 596.01			
	판매시설	지하1층 중층	420.24	판매시설(커피숍)	
	업무시설	지하1층 중층	175.77	업무시설(은행)	

○ 용도변경(비시설) (단위:m<sup>2</sup>)

층 별	기 정		변 경		비 고
	시설(용도)	면 적	시설(용도)	면 적	
지하 1층	업무시설(은행)	588.71	판매시설(매장)	287.50	일부변경
			업무시설(은행)	301.21	위치변경
지상 5층	문화및집회(예식장)	2,136.43	판매시설(백화점)	2,136.43	

○ 공작물 설치 : 비상연결통로 (2층 본관동 주차장과 철골주차장 사이)

◆ 서초구고시 제2009-2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1997-29호(1997. 6.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진입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변경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현릉IC 건설에 대비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곡동 헌인마을 서측 진입도로를 확장·개선코자 하는 사안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	12	국지 도로	280	내곡동 산12-464	내곡동 산12-412	일반 도로	-	1997. 6.23 (서초고29)	
변경	중로	3	-	15	국지 도로	280	내곡동 산12-464	내곡동 산12-412	일반 도로	-	1997. 6.23 (서초고29)	순환벚꽃길 보도폭 2m

-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고시도면과 같음)
-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에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고시 제2009-7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2-82(2002. 10. 25)호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3-2 (2003. 1. 15)호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3-22(2003. 3. 31)호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5-14(2005. 3. 18)호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6-13(2006. 3. 20)호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7-11(2007. 3.26)호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8-13(2008. 3. 26)호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한, 강동구 하일동 328-1 등 15필지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을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강일동 328-1 등 15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강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다. 면적 또는 규모 : 16,441㎡, 68세대
- 라. 시행자의 성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강동구 성내동길 27(성내동 540))

구 분	당초사업기간	변경(연장)사업기간
사업기간 연장	인가일로부터~2009.3.30	인가일로부터~2010.3.30

- 마. 변경내용
- 바. 관련도면 및 서류의 비치 : 강동구청 재건축과(☎480-1796~8)

# 구 공 고

## ◆ 광진구공고 제2009-261호 「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우리구 자양1,2동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본 “건축허가 기준강화 적용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6일  
광진구청장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 02-450-7654)
3. 열람내용
  - 가. 대상구역 : 광진구 자양1,2동 3개지역 (11.2ha)
    - 자양1동 223일대 : 8.8ha
    - 자양2동 652일대 : 1.8ha
    - 자양2동 593일대 : 0.6ha
  - 나. 관련근거
    - 도시개발과-10607호(2007.06.20. 구청장방침 제1078호 제1775호) 「재건축예정 후보지등 투기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강화 계획」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서울시건축조례 제6조 제1항 바목 “기타법령에 의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다. 기준강화내용
    - 1) 다세대주택 등의 최소 대지지분은 세대별 50㎡이상
      -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소

- 규모 다세대주택 등 신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 변경(건축물전환 포함)으로 호수(쪼개기) 증가를 수반하는 행위
- 2) 건축허가 강화기준에 저촉될 시에는 광진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투기성 여부 심의 후 처리
  - 3) 시행예정일 : 2009.05.01.
- 라. 제출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의견요지 작성하여 주택과로 서면 또는 FAX(02-450-1749)로 제출
4. 관련서류: 생략(광진구청 주택과 비치도서와 같음).

청렴홍보문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	----------------------------

## ◆ 광진구공고 제2009-269호 도시계획사업(철도) 실시계획인가 등 신청에 따른 열람

1. 서울시 광진구고시 제2009-4(2009.01.22) 및 제2009-10(2009.02.19)호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450-79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 2) 사업의 명칭 : 7호선 공릉외 7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3공구)
- 3) 사업의 목적 : 중곡역 1번출구에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이용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다. 사업 규모

- 1) 위치 : 광진구 중곡동 30-1 일대
- 2) 면적 : 35.8㎡
- 3) 내용 : 중곡역 1번출구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15인승)

라. 사업시행자 : 서울도시철도공사(성동구 용답동 223-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 2009.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따로붙임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자. 열람장소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450-7913)

## 토 지 조 서

1. 사 업 명 : 7호선 공릉외 7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3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도시철도공사(성동구 용답동 223-3)
3.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4. 사업의내용 : 중곡역 1번출구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15인승)
5. 토지조서 내용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1	광진구 중곡동	30-1	대	40,450.3	35.8	보건복지가족부	서울 광진구 중곡동 30-1	-	-	-	

**◆ 노원구공고 제2009-21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토지보상)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3.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12.1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된 사적제440호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47-1번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저촉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문화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6일  
 노 원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47-1번지
-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보호구역내 토지 보상
- 다. 면 적 : 27,706㎡
- 라. 사업의 내용 : 토지보상
- 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 바.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0. 12. 30.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20

- 일간
-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문화과(☎ 950-3412)
- 차. 공고방법 : 시보게재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진체 면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47-1	임야	27,706	27,706		은영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08-142						
						유창수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12-402						
						유세준	서초구 방배동892-10, 202호						
						류창수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12-402						
						류창수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12-402						
						김정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9 밀레니엄리젠시206호	도봉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19-10	근저당설정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가 연월일
성명	주소	하천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티이건설개발(대표:이경숙)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20-1번지 경성연립 B동5호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4-2번지상한 강	72㎡ (기선1척)	공사용선박 정박대기에 따른 토지점용	2009. 3.17. ~ 2009. 7.31.	2009.3.17.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34호  
청소년을 위한 한강문화유적탐방교실 및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단체 공모**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한강문화유적탐방교실과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운영 단체를 공모하오니 전문성과 의욕 있는 청소년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모집분야 등

모집분야	청소년을 위한 한강문화유적 탐방교실 운영단체 1개	청소년을 위한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 - 요트 등 운영단체 1개 - 윈드서핑 등 운영단체 1개	
사업내용	청소년을 모집하여 한강주변 문화유적 순회 탐방	청소년을 모집하여 한강 특화된 공원을 배경으로 요트 및 윈드서핑 등 수상레저 스포츠 교실 운영 (요트·윈드서핑 전시 및 퍼레이드 등 참여)	
사업기간	'09. 4월 ~ 10월(7개월)	'09. 4월 ~ 10월(7개월)	
사업비 (보조금 지급)	280백만원	윈드서핑 등 운영단체 190백만원	요트 등 운영단체 190백만원

2. 응모 자격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최근 1년내 서울시 공익사업 공모실적이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의한 청소년단체

3. 사업설명회

가. 일시 : 2009. 3. 23(월) 14:00~16:00  
나. 장소 : 한강사업본부 2층 회의실

- ※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124)  
2호선 뚝섬역 1번출구에서 버스 2224,2413번 승차 후 뚝도아리수 정수사업소 하차
- 다.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등
- 4. 사업계획서 접수 및 제출서류(1개 단체에서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가. 접수기간 : '09. 3. 30(월) ~ 3. 31(화) (2일)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한강사업본부 2층 수상관리과 (방문접수, 팩스, 우편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 각 12부, 디스켓1매 포함 (PT자료 7분이내)
  - 공모사업신청서, 법인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요약), 응모자서약서, 공모사업관련실적서
  - ※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회시 안내
- 5. 선정심사 및 통보  
가. 사업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분야별 2순위까지 선정하고 후순위자를 예비자로 함)  
나. 선정기준
  - 사업계획분야 (70%) : 사업 계획의 독창성, 프로그램 내용·구성, 사업비 예산 편성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안전성, 공익·참여·홍보 등 방안
  - 참여단체역량 (30%) : 참여단체의 전문인력, 시설·장비보유, 사업실적 등
- 다. 심사위원회 개최 : 2009. 4. 7(화) 14:00~16:00, 한강사업본부 2층 회의실  
라. 결과통보 : 2009. 4. 8일 (예정), 한강사업본부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단체 개별통보
- 6.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급  
가. 제출된 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단체와

- 협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내용에 따라 선급 보조금 및 중간 또는 최종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협약은 쌍방의 협의에 따라 세부 추진사항 검토결정하고 쌍방합의 불가시는 차순위자와 추진가능
- 나.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정산보고 검토후 지급보조금 삭감가능)
- 다. 사업의 평가 :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의 투명성, 타당성, 효과성 등 평가
- 7.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선정된 단체의 고위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함  
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수상관리과(☎3780-0767~8)로 문의바랍니다.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9-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 종 수 (한수개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10 고촌빌딩310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6-113번지상 한강	696㎡ (기선1척,부선2척)	공사용선박 정박대기에 따른 토지점용	2009. 3.19. ~ 2009. 6.30.	2009.3.19.

**사업소공고**

**◆ 은평소방서공고 제2009-12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등록취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은 평 소 방 서 장

귀 업체는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3월 처분 하였으나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정처분(등록취소) 전 소방시설공사법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관련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일시에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 조치함을 알리기 위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 대상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행정처분 사 유	행정처분 종 류	법 적 근 거
태한설비(주)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87-18)	김광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은평 1996-3호 1996.06.05.】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등록취소】 (2009.3.23)	소방시설공사법제4조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9조[별표1] 제2호나목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는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서울특별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은평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는 서울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384-0119, FAX 357-0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09-5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제영등포 2009-5호	일반소방시설 공사업 (전기분야)	주식회사 영재전력	최권영 (60092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밤나무길 36 (도림동 141-191) (☎02-847-1826)	2009. 03.19.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02-2678-1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9-9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

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09년 3월 26일  
송 파 소 방 서 장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송파2009-04호 (2009.03.19)	주식회사 노비스종합건설 (110111-2151720)	박종원 (74.06.15)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47	(02) 419-7415

※ 기타 문의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02-431-4109)로 연락바랍니다.

## 정 정

### ◆ 정정1

서울시보 제2897호(2009.3.18) 49쪽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4750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p>제3조(구성)</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서울특별시의회 일본공내청 소장 의궤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p> <p>2.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p> <p>3. 언론인, 법조인</p> <p>4. 서울특별시 문화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p> <p>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2.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구성)</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p> <p>2.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p> <p>3. 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p> <p>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1.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2.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p> <p>⑤ 위원회 활동의 홍보를 위하여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p>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b>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지정서</b>
기 관 명	
위 치	
지정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감</p>	

## ◆ 정정 3

시보 제2898호(2009.3.19)의 66쪽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 내용중 일부 정정사항(세운6구역 위치 정정)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가. 정정 전

## • 촉진구역의 경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소계(6개구역)			388,663.2		
기정	세운1구역 (광장)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 일대	4,393.1	도시계획시설사업	
기정	세운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3,262.9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2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44,108.5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3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46,07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5구역	중구 산림동82-5번지 일대	43,215.0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6구역	<b>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b>	217,611.4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정정 후

## • 촉진구역의 경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소계(6개구역)			388,663.2		
기정	세운1구역 (광장)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 일대	4,393.1	도시계획시설사업	
기정	세운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3,262.9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2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44,108.5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3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46,07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5구역	중구 산림동82-5번지 일대	43,215.0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설	세운6구역	<b>중구 초동 10-1번지 일대</b>	217,611.4	도시환경정비사업	